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머 리 말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법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법참여 열망을 반영하여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법률해설서는 물론, 배심원에 대한 각종 안내책자 및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습니다. 이 책자는 위 법률뿐 아니라 2007. 10. 4.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곁들이는 한편, 그 시행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예규, 각종 양식까지 포함하여 실무가들이나 학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매뉴얼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소속 법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1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약 어 표

개정 형소법	개정 형사소송법
형소규칙	개정 형사소송규칙
참여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참여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CONTENTS_ 목차

제 1 장 서 론 ————— 11

- Ⅰ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과 12
- Ⅱ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14

제 2 장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 17

- 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18
 - 1. 개요 18
 -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 18
 - 3. 공소장 부분의 송달 22
 - 4. 피고인 의사확인서 송달 23
 - 5. 국선변호인의 선정 24
 - 6. 피고인 의사의 확인 24
 - 7. 배제 결정 26
 - 8.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29
 - 9.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30
- Ⅱ 공판의 준비 31
 - 1. 공판준비절차 31
 - 2. 공판준비기일 32
 - 3.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35
 - 4.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흐름 35

제 3 장 배심원 선정 준비 ————— 39

- 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40
 - 1. 개요 40
 - 2.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40
 - 3.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42

CONTENTS_ 목차

II 배심원후보자 선정절차	44
1. 배심원후보자 선정	44
2. 선정기일 지정 및 통지	45
3. 선정기일 통지서의 송달 불능	49
4. 선정기일 재통지	49
5. 선정기일의 변경	49
6.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	50
7. 선정기일 출석의무 및 불출석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제재	57

제 4 장

배심원 선정 59

I 배심원 선정기일	60
1. 개요	60
2. 선정기일의 개시	63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66
4.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69
5. 무이유부기피신청	73
6.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선정절차 진행	77
7.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	77
II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선정	79
1.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	79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	81
3. 배심원의 추가 선정	82

제 5 장

증거조사절차 이전 단계의 공판절차 진행 85

I 공판의 개시	86
1.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86
2. 피고인의 출석	87

3.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87
4. 재판장의 모두설명	88
5.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89
6. 모두진술	90
7.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관한 진술	92
8.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92
9.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93
10. 통상절차회부	93
II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95
1.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95
2. 배심원의 필기	96
3. 배심원의 의무	97

제 6 장 증거조사 절차 99

I 개요	100
II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102
III 증거의 결정	103
IV 증거의 조사	105
1.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105
2. 증거서류의 낭독 또는 증거물 제시	105
V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108
VI 증인신문	109
1. 일반론	109
2. 증인신청과 증거결정	109
3. 증인의 출석 확보	110
4. 증인신문의 방법	110

CONTENTS_ 목차

제 7 장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	113
제 8 장	증거조사절차 완료 이후	117
	■ I 피고인 신문	118
	■ II 검사의 의견 진술	120
	■ III 피고인·변호인의 의견 진술	121
제 9 장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양형 토의·판결 선고	123
	■ I 재판장의 설명	124
	1. 개요	124
	2. 재판장 설명의 내용	124
	3. 재판장 설명의 방식	126
	■ II 평의 및 평결	127
	1. 개요	127
	2. 평의 및 평결	129
	3. 양형 토의	138
	■ III 판결 선고	140
	1. 개요	140
	2. 선고 및 판결서 작성	141
제 10 장	배심원 안내·편의 제공·보호	145
	■ I 배심원 안내	146
	1. 개요	146
	2. 장애인에 대한 배려	147

II 여비·일당 지급	148
1. 개요	148
2. 지급절차	148
3. 감면	149
III 배심원 보호	151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151
2.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151
3.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151
4.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152
5.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행위 금지	153
6.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153
7. 배심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죄	153

부 록

—————	155
■ 참여법률 및 참여규칙 조문대비표	156
■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194
■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예시)	204
■ 국민참여재판 관련 각종 양식	220

제1장
서론

Supreme Court of Korea

I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과

Supreme Court of Korea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업 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소송 사건의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사건의 최종적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법관에게 귀속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최종 보고하였다.

대법원도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대법원은 2000년 2월경 21세기에 대비한 종합적 사법발전계획인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를 주요 계획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나아가 2003. 10. 28. 그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어느 제도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본 모델을 정한 후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 12. 30.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하고,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모델을 결정하지는 않고,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한다.”라고 건의하였다.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위 법률안은 2005. 11.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 12. 6.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당위성이

인정되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적 결단이 있는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현행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위 법률안은 모두 89개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시행일은 '2007년 3월 1일'로 정하여져 있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 형소법(형사소송법의 경우 개정 전후에 있어 차이가 없더라도 편의상 "개정 형소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과 중복되는 상당수의 조항이 삭제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변경되는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다. 결국 2007. 4. 30. 모두 60개조로 구성된 참여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었고, 그 시행일은 '2008. 1. 1.'로 정하여졌다. 이로써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탄생하게 되었다.

배심제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심제란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아니하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배심제적 요소), 만약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참심제적 요소, 다만 법관이 배심원에게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심제를 수정한 것이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하면서도(참심제적 요소)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배심제적 요소).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배심제의 수정).

이와 같은 참여법률의 특징은 위헌의 소지를 피하면서 실무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가장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을 발견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참여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 형태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Supreme Court of Korea

01 | 개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참여법률 제5조 및 제8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3조). 한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참여법률 제9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10조).

02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

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참여법률 제5조 제1항과 참여규칙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명	해당조문	죄 명	비 고
형 법	제144조 제2항 후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치상 제외
	제164조 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 제2항 후단	폭발성물건파열 치사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가스·전기 등 방류 치사	
	제173조 제3항 후단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 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	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	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9조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치상 제외
	제262조(제259조 부분)	폭행치사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유기치사, 존속유기치사	
	제281조 제1항 후단	체포·감금등치사	
	제281조 제2항 후단	존속체포·감금등치사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모두 포함
	제305조 (제301조, 제301조의2 부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한 상해,치사,살인,치사	상해(치상) 포함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상해(치상) 제외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상해(치상), (치사)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모두 포함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제2항 및 제3항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 치사·강간	상해(치상), (치사) 모두 포함
	제368조 제2항 후단	중손괴치사	상해(치상) 제외

법률명	해당조문	죄 명	비 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뇌물죄	수뢰액 1억원 이상 (뇌물죄 가중처벌)	
	제4조의2 제2항	체포·감금등의 치사	상해(치상) 제외 (체포·감금죄 가중처벌)	
	제5조 제1호	국고등 손실	손실액 5억원 이상	
	제5조의2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 가중처벌	재산취득·살해목적
		제2항		이익취득, 살해, 치사, 폭행등을 한 경우
		제4항	영리취득,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및 이들의 수수·은닉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범 추가 가중	
		제5항		
	제5조의5		강도상해·치사, 강도강간 재범자의 가중처벌	3년 이내 재범, 미수 포함
	제5조의9	제1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살인죄관련 보복범죄
		제3항		상해, 폭행, 체포·감금 등관련 보복범죄 중 치사
제11조	제1항	마약 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와 그 미수범	
	제2항 제1호		마약등 가액이 5천만원 이상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수재등의 죄의 가중처벌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액 1억원 이상	

법률명	해당조문		죄 명	비 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 + 강간등 특수강도(미수) + 강간등
	제6조		특수강간등	위험물휴대, 2인이상 + 강간등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부정의약품제조등의 처벌	인체에 현저히 유해, 성능미달 등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불법배출치사상	치상 포함
위 대상사건의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사건			교사, 방조 미수 예비, 음모	
위 대상사건에 병합한 사건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과 본범의 죄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확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므로(참여법률 제5조 제2항), 공소장의 접수 사무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루어진다. 법원별로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두는 경우에도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참여법률 제8조 제3항), 무엇보다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물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할 것이나, 1차적으로 접수계에서 앞서 본 국민참여재판 조건표를 참고하여 대상 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전지 등을 활용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표시한 후 재판부에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수계로부터 공판기록을 받은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기에 앞서 당해 사건이 참여법률 제5조, 참여규칙 제2조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참여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5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즉 ① 1인이 범한 수죄,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③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④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03¹ 공소장 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66조). 특히, 구속 기소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의사확인 절차,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에 따른 이송, 재배당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를 살펴 재판장이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참여사무관 등도 검사가 보정한 주소로 단순히 재송달을 실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4¹ 피고인 의사확인서 송달

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송달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전산입력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위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참여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참여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변복의 제한 및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참여규칙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건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지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의 번역문을 송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4조). 특히,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문 공소장 부분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 재형 2005-1 제4조).

누구든지 참여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참여법률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만 보장되므로(참여법률 제8조 제2항 전문), 외국인인 피고인도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각급 법원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번역문을 함께 송달할 필요가 있다.

05 | 국선변호인의 선정

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부분 송달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하여야 한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당해 사건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취지로 고지한다.

06 | 피고인 의사의 확인

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1) 제출 방식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사건번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3조 제2항).

(2) 제출 기한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8조 제2항 전문).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로써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8조 제2항 후문). 만약, 피고인이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참여법률 제8조 제3항).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제출을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5조

제1항). 구체적인 송달 시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시이다. 참여법률 제5조가 대상사건으로 중대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소규칙 제142조 제5항에 따른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허가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재판장은 피고인이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더라도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장 변경에 따른 의사확인의 기산일은, 공소제기 시부터 대상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장 부분 송달일인 반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비로소 대상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5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통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사건의 재판절차가 달리 진행되므로,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검찰에 통지하여 재판준비의 안정성과 재판절차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참여규칙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참여규칙 제3조 제3항). 통지의 방법은 서면 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통지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사무관 등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나. 심사

재판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작성되었는지, 의사확인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의사확인서를 심사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에 별도의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은 필요 없으나, 절차의 명확성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에 재판장 확인인을 날인한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한다는 취지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 관한 재판장의 확

인을 마친 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국민참여재판’ 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취지를 전산입력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중요사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보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중요사건의 접수와 중국 보고 예규).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4조 제1항).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원한다”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두 개의 항목 중에서 V표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실무상 참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의 통지 및 심문방법에 관하여는 참여규칙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의사번복 및 그 제한

국민참여재판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나 지식에 기초하여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참여법률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종전 의사를 번복하는 것을 허용하되, 절차적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번복 시기에 제한을 두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 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8조 제4항).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8조 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본다(참여규칙 제5조 제2항).

07 | 배제 결정

가. 의의

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참여법률 제9조). 즉 법원은, ① 조직폭력 사건과 같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본인 및 친족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호),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아 피고인별로 증거조사를 별도로 하여야 하거나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9조 제1항).

나. 판단 기준

실무상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논의될 수 있다.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하여 배심원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향후 법원의 실무운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법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국에 체류하는 등 언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 등의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통상절차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후 비로소 공소장이 변경되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재판의 지연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증인이 많아 1주일 이상 연일 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살인 사건 등에서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여 배심원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법원은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교衡量하여 신중하게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는 신증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보다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거나 선택하려는 시도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참여법률 제10조 제1항),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양형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해당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건이 배당된 다른 합의부의 양형이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참여법률 제10조 제1항),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이러한 배제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배제결정 후에는 해당 재판부가 직접 재판하여야 하는데 자칫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무시하고 배제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빚게 될 우려도 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 오히려 배심원이 엄격한 양형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함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여 소정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있고(참여법률 제8조 제4항),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바꾼 경우에는 사건을 종전의 재판부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송 또는 이부된 재판부에서 계속하여 심리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만약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보다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거나 선택하려는 시도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청취절차에서 충실하게 심리한 후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원간, 재판부간 양형편차가 크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고, 특히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양형은 다른 법원, 다른 재판부의 양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시기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배제사유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확인한 결과

배제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배제결정의 종기는 공판준비기일 종료일 다음날까지로 정하였다(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이 때의 공판준비기일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의미한다.

라. 절차

법원은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참여법률 제9조 제2항, 참여규칙 제6조 제1항). 참여규칙 제6조 제3항은 통지 방법 및 통지 증명에 관하여 참여규칙 제3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6조 제2항).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을 정하거나 공판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제결정의 필요성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당해 기일에서 구술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6조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9조 제3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후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 기록 표지에 날인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그 취지를 전산입력한다.

08 |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참여법률은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참여법률 제8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였다(참여법률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참여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7조 제1항).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

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신속하게 송부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같은 조 제3항).

사건을 이송받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이송된 사건을 곧바로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09 |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재배당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하여야 할 것이다(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설치된 다른 전문재판부(부패, 성폭력 등)에 배당되었던 때에도 이와 같다. 재배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리의 지연 등 절차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1 |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를 말한다. 공판심리가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공판준비절차는 어디까지나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심리가 지나쳐 공판기일에서의 심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형소법 제266조의5는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하여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개정 형소법 제266조의6부터 제266조의15까지는 참여법률에 특칙을 두지 않는 이상 국민참여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개정 형소법의 공판준비절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인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참여법률 제36조 제1항 본문). 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집중심리에 더욱 충실하여 재판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절차를 통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참여법률 제36조 제1항 본문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법원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한 경우,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③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법원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을 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어 더 이상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참여법률 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한편 참여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이송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다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36조 제3항). 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전제된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에 대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등 일반 형사재판의 준비절차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준비절차의 진행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판준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참여법률 제36조 제4항에서는 개정 형소법 제266조의5 제3항과 마찬가지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하여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공판기일 전에 배심원 선정기일이 진행되므로 공판준비절차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당연히 공판기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원칙적인 재판형태로 규정하였으므로(참여규칙 제29조), 그 당연한 결과로서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참여규칙 제27조 본문). 다만 개정 형소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같은 조 단서).

02¹ 공판준비기일

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1) 필수적 절차

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준비절차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도 필수적으로 열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37조 제1항).

(2)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절차

개정 형소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개정 형소법 제266조의7 제1항), 이는 공판준비기일이 종료할 경우 실권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은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구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참여법률 제7조), 법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공판준비기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가급적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절차 진행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상 유의할 점

(1) 공판준비기일과 피고인의 출석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개정 형소법 제266조의8 제1항), 법원사무관 등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참여법률 제37조 제4항).

개정 형소법과 형소규칙은 피고인에게도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66조의8 제5항).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참여법률 제9조 제1항), 법원이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배심원의 수를 5인으로 정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경우에도 법원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치우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직접 변소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 공판준비기일 조서의 작성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된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의 구체적 진행방식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기일의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하여진 공판준비결과를 토대로 당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의 채부를 마친 후에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개정 형소법 제266조의9 제1항 각호가 정하는 것과 같이 사건 쟁점 정리, 증거 채부 결정,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 결정,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 결정, 공판기일 지정·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①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참여법률 제13조 제2항)
- ② 예비배심원을 두는지 여부 및 예비배심원의 수(참여법률 제14조)
- ③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피고인별로 행사 가능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 수(참여규칙 제21조)
- ④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 ⑤ 배심원 선정기일 절차 운영 방식
- ⑥ 배심원 선정질문 시간의 제한 설정
- ⑦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방식(참여법률 제28조)
- ⑧ 무이유부기피 방식(참여법률 제30조)

실무상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참여법률 제44조), 이러한 경우 영상녹화물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 |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개정 형소법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 형소법 제266조의15 전문).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후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필수적으로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 이미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될 것이므로(참여법률 제36조, 제37조),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심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거나 사건의 복잡성이 발견되어 쟁점정리나 집중심리를 위한 심리계획의 설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다시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사례로 상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가 문제이나, 이 경우도 기일간 공판준비기일에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형사법정에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위한 전자적 설비를 갖추 수 없어 별도의 전자적 설비를 갖춘 공판준비절차실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소규칙도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소규칙 제134조의4 제3항 후문).

04 |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흐름

가. ① 단계 : 공판준비절차 회부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가 제출되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 기록과 제출된 의견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이를 참고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한다.

재판장은 공판준비절차 회부 명령을 하고, 기한을 정하여 검사에게 의견서 기재를 참조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에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도록 하는

준비명령을 내린다. 불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2주 정도의 기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1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나. ② 단계 : 공판준비절차 진행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피고인·변호인의 1차 공판준비서면 제출 후 다시 검사에게 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증거신청 등을 명하는 등 추가적인 기일 외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게 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쟁점의 정리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2차 공판준비명령을 보내고, 그 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의 진행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① 의견서 제출 없이 제출기한 도과
- 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 ③ 공소사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인정
- ④ 공소사실을 다툼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따라 추단할 수 있는 당해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 사회적 관심의 정도, 예상되는 증거신청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면서 곧바로 공판준비기일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속 사건과 같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으로부터 이송되어 오면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렸거나 증거조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배심원 선정기일은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서 지정되는데, 후술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 공판준비기일과 선정기일 사이에 3~4 주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기일 외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이후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면이나 법원에 전달하는 의사가 신속하게 재판장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참여사무관 등은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이 별도로 분류되어 신속하게 재판장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③ 단계 :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형사공판절차와는 달리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은 필수적이다(참여법률 제36조, 제37조). 공판준비기일에서 할 사항에 관해서는 개정 형소법 제266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어디까지나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공판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에서 더 나아가 실체관계에 관한 심리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참여법률 제37조 제4항).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의 채부 결정까지 하게 되는데, 배심원은 증거능력의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참여법률 제4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은 참여법률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하므로(참여규칙 제27조), 실무상으로 기일간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당시에는 배심원이 선정되지도 않아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할 수도 없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66조의10 제1항). 준비기일 결과 정리된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는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66조의10 제2항).

제3장
배심원 선정 준비

Supreme Court of Korea

01 | 개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한다(참여법률 제23조 제1항). 참여법률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참여법률 제16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이 등재된다(참여법률 제22조 제1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참여규칙 제13조 제2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은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다. 지방법원장은 주민등록정보를 보호하고 배심원 선정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15조 제1항).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있고, 검색하거나 출력한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전담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은 해당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되, 통상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수가 많아 전담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는 법원 직원을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과 함께 전담관리자로 공동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02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

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할 수 있다)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22조 제1항, 참여규칙 제12조 제1항). 위 조항의 ‘그 관할 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지방법원 본원이 작성하는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22조 제2항). 전담관리자는 위와 같이 주민등록정보가 송부된 때에는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연령, 주소 등이 고르게 분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참여법률 제22조 제3항, 참여규칙 제13조 제1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초 명단이므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을 충분히 포함하고 성별, 연령 등이 고르게 분포하는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까지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한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14조). 지방법원장은 당해연도의 관할구역 내 거주 인구수, 국민참여재판 사건 수를 고려하여 다음 해의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의 배심원후보예정명부 등재 인원과 같게 정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절차법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은 최소한 지역 주민의 0.5%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별 배심원후보예정자 인원은 2006. 12. 31.을 기준으로 한 만 20세 이상 관할구역 주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법 원	배심원후보예정자 수(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0
서울동부지방법원	6,000
서울남부지방법원	8,000
서울북부지방법원	8,000
서울서부지방법원	5,000
의정부지방법원	6,000
인천지방법원	9,000
수원지방법원	8,000
춘천지방법원	1,500
대전지방법원	6,000
청주지방법원	3,000
대구지방법원	8,000
부산지방법원	10,000
울산지방법원	5,000
창원지방법원	6,000
광주지방법원	6,000
전주지방법원	3,000
제주지방법원	2,000
합 계	110,500

참여법률에서는 지방법원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주민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8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에 대한 주민자료요청은 부득이하게 대법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일괄하여 요청하였다. 2009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2008년부터는 참여법률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03¹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14조 제2항).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에게 사망, 관할

구역 외로 이사, 국적 상실, 참여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제18조에 따른 제외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는 해당자를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같은 조 제1항).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을 미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선정기일 통지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배심원후보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배심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01 | 배심원후보자 선정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마다 필요한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고 이를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다(참여법률 제23조 제1항).

개별 사건에서 배심원후보자의 수를 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정기일의 공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필요 이상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일 통지 및 일당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배심원후보자 관리에 따른 법원의 부담 증가 및 불필요한 인원이 법원에 출석하였다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귀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면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응답하지 않은 채 선정기일에 불출석하는 비율도 높아지므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법원의 부담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의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판장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 피고인의 수, 무이유부기피인원 수, 예상 재판 소요기간, 예상 출석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의 3배 정도의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피고인이 2인 이상인 사건으로 무이유부기피인원 수가 증가하거나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 수가 많아 예상 재판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배심원후보자가 사건에 대한 사전정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유부기피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그보다 더 많은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모의재판에서의 평균 출석률인 10%가 유지된다면, 배심원 9명 및 예비배심원 1명인 사건에서 25명 내지 30명 정도의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게 하려면, 송달불능률을 10% 정도로 볼 때 270명 ~ 330명 정도의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계산에 이른다. 위와 같이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건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후

보자 출석률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모의재판과 달리 선정기일 출석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출석률을 15% ~ 20% 정도로 하여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라면 배심원후보자는 170명 ~ 22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이 저조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배심원후보자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13조 제2항을 활용하여 선정기일에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배심원 수를 달리 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여러 건 실시된 이후에는 재판장이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의 배심원후보자 평균 출석률에 관한 통계를 고려하여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배심원후보자의 수가 정하여지면, 국민참여재판 전담관리자는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로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한다.

02 | 선정기일 지정 및 통지

가. 선정기일 지정

(1) 제1회 공판기일과 같은 날로 선정기일 지정 원칙

배심원후보자가 선정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한다(참여법률 제23조 제1항). 선정기일 통지를 위해서는 먼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9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사건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는 배심원후보자가 많아 이유부기피로 불선정되는 배심원후보자가 많을 것이 예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선정기일에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달리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것이다.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오전 10시에 선정기일을 지정하였다면 같은 날 14:00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려 요소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는지

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의 하계 휴가 기간, 연말과 연초, 공휴일과 인접한 날 등에 선정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연일개정에 따른 전체 공판기일을 고려하여 선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선정기일과 사건을 심리하는데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사건에서 선정기일을 목요일로 지정하여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선정기일을 수요일로 지정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금요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일 평의가 종료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참여규칙 제39조 제1항), 그 다음주 월요일로 평의기일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선정기일부터 평의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장은 전체 공판기일을 고려하여 한 주일 내에 연속하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기일 및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배심원후보자의 준비기간 고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일 통지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배심원후보자가 질문표에 답하여 제출하거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직장·육아·노인 부양 등과 관련한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직전에 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정기일을 바로 앞두고 이루어지는 통지는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도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선정기일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선정기일 출석을 촉구하는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를 발송할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된다. 따라서 선정기일 통지서는 늦어도 선정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구속사건 등으로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정기일 전 3주일 무렵에 선정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상 선정기일 통지에 수 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원은 선정기일 3~4 주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일 통지

선정기일 통지시에는 선정기일 통지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와 반송용 봉투를 함께 송달한다(참여규칙 제16조 제2항).

(1) 선정기일 통지서

선정기일 통지서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 선정기일 일시·장소,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다(참여규칙 제16조 제1항).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할 법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정기일 진행에 앞서 선정기일을 진행할 법정 외의 장소에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을 확인하고 배심원 안내 동영상을 보여 주며 질문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질문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선정기일 통지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봉한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18조 제2항). 예컨대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의 경우 공무원 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중병·상해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면제신청의 경우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이 소명자료에 해당한다. 불출석 사유 신고서가 미리 제출되면 선정기일 이전에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통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불필요한 출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사유 신고서는 늦어도 선정기일이 열리기 1주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질문표

질문표는 배심원후보자가 참여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즉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참여법률 제25조 제1항).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25조 제2항, 참여규칙 제18조 제1항).

참여법률 제26조 제1항은 배심원후보자명부를 선정기일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표에 답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간은 늦

어도 선정기일 전 1주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표는 배심원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표지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질문표 표지에는 배심원후보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선정기일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통지하거나 선정기일이 임박한 때 선정기일 출석통지의 취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기일에서는 검사나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성별·출생연도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므로(참여법률 제26조 제1항), 법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만 사본하여 검사와 변호인에게 제공한다(참여법률 제26조 제2항). 질문표 표지와 답변 부분의 우측 상단에는 각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기재하여 어떠한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표는 당해 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선정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참여법률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폐기한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33조 제1항). 질문표의 폐기 시점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선정기일 종료시가 적정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정기일이 종료되더라도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허위기재한 것이 밝혀지면 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고, 배심원후보자가 질문표에 허위기재한 것이 밝혀지면 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선정기일이 종료되더라도 질문표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당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질문표를 보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질문표는 재판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항소심으로 기록 송부되지 않으므로 제1심 법원에서 당해 사건 완결시까지 질문표를 보관할 이유가 없는 이상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배심원 안내서

배심원 안내서는 배심원후보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의 역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이므로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반송용 봉투

배심원후보자가 질문표에 답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불출석사유신고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송용 봉투를 함께 송달한다. 배심원후보자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봉투는 수취인 부담 방식으로 제작·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¹ 선정기일 통지서의 송달 불능

선정기일 통지서는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될 수 있다. 검사나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주소를 보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배심원 후보자별로 입력해 두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 때에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와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제외되도록 하여 당해연도에 다시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불필요한 송달을 줄일 필요가 있다.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 부재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재송달할 수 있을 것이다.

04¹ 선정기일 재통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원에서 제출을 명한 기간까지 질문 표에 답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를 송달할 수 있다.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에는 배심원후보자가 질문 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선정기일 출석의무를 알리고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수 일 내에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05¹ 선정기일의 변경

선정기일이 지정되어 배심원후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선정기일과 함께 지정된 제1회 공판기일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선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 다만 선정기일이 변경될 경우에 배심원후보자

의 출석률이 낮아져 선정기일에서 필요한 배심원이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06¹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

가.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배제사유 확인

배심원후보자로부터 불출석 사유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는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므로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여법률 제19조의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선정기일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1) 결격사유(참여법률 제1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참여법률 제1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 직무로부터 배제되도록 하였다. 배심원후보자가 참여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여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결과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참여법률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배심원후보자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여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공무원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면제사유(참여법률 제20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나. 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1) 제1호

배심원후보자가 제1호에 기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의학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배심원후보자의 면제 신청이 없거나 배심원후보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으로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배심원후보자의 건강상태, 집에서부터 법원까지의 거리와 교통수단 및 예상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되, 배심원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2) 제2호

배심원후보자가 제2호에 기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배심원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5년 동안 배심원 직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일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제2호에 기하여 면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제6호

배심원후보자가 제6호에 기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직권으로 배심원 직무를 면제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자칫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심원후보자가 청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심원 직무를 면제할 수는 없고, 청각 장애로 인하여 증거조사 및 배심원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배심원 직무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와 변호인이 무이유부기피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6호는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심원후보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거나 배심원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면제 신청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심원후보자에게 그와 같은 질병이 있는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배심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심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나 실무상 논의될 수 있다. 배심원후보자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배심원후보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이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원후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배심원 직무를 면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4) 제7호

제7호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배심원에게 직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 직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에게 “극도의 곤란(extreme hardship)”이 있는지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제7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 이와 같은 해석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 직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원칙은 ①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이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는 것과 배심원 직무로 인하여 배심원의 생활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하고, ② 배심원 직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직무수행이 약간 곤란한 경우로는 부족하고 극도로 곤란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③ 면제사유는 배심원후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주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 기준은 법원이 개별적 면제 사유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이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배심원 직무수행이 배심원후보자의 경제적 안정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가계 소득, 배심원 직무 수행 예상 기간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기간 동안 수입이 일부 감소하거나 고용주가 배심원후보자의 직무 수행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심원 직무를 면제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다만, 비교적 장기간의 배심원 직무 수행 기간 중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거나 배심원 직무수행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배심원후보자의 직장에서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배심원 직무의 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배심원후보자가 개호 또는 양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지장이 있는 병자, 노약자, 아동을 돌보아야 할 실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

배심원후보자나 부양을 받는 사람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서는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간호를 받는 자가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모유 수유하는 산모는 수유 기간 동안 배심원 직무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종사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용무로 본인이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에 현저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상당 기간 전에 예약된 출장을 떠나야 하고 대체가 어려운 경우
- ④ 배심원후보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때문에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이상이나 질병, 지속기간, 그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거나 배심원후보자의 집과 법원간에 적당한 대중 교통 수단이나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배심원후보자의 연령·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재판기간이 1~2일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 ⑥ 상당 기간 전에 예약되고 비용을 지급하여 취소가 어려운 휴가 또는 여행이 계획된 경우
- ⑦ 부모 등 친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취업을 위한 면접, 중요한 시험 등과 같이 사회생활상 중요한 용무로 다른 날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⑧ 배심원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배심원이 관리하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파손의 위험이 큰 경우
재물의 성격, 위험의 종류와 지속기간,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 재물을 보호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참여법률 제20조 제7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재판장에 따라서는 배심원 직무 수행에 소극적이고 열의가 없어 면제 신청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에 선정되어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배심원 직무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는데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배심원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배심원후보자가 면제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배심원 직무 수행의 부담을 오로지 배심원 직무 수행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배심원후보자의 직무 면제 신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원 간, 재판부 간에 일관된 면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배심원 후보자의 주요 불만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재판부에 따라 지나치게 관대하게 면제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절차

참여규칙은 참여법률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선정 기일의 일시 및 장소, 면제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참여규칙 제11조 제1항 본문). 배심원후보자가 이와 같이 별도의 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상 선정기일 통지서의 별지인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활용하여 해당란에 표시하여 반송용 봉투에 넣어 회신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될 것이다.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 직무 면제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병·상해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면제신청의 경우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이 소명자료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도, 면제신청서가 늦게 제출되었거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기일 이전에 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참여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선정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된 면제신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기초로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배심원후보자를 직접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선정기일에 면제신청사유를 심사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면제를 신청한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배심원후보자가 통지된 선정기일에는 출석할 수 없지만 몇 달 후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니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배심원후보자로 소환된 후 특정 사건의 배심원후보자가 될 지가 정해지는 제도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연기가 가능하나, 특정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는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그와 같은 연기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면제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신원조회 · 경력조회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 · 단체에 배심원후보자 · 배심원 · 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21조).

이에 따라 재판장은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보고나 서류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선정 기일 이전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 서류송부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6호)에 따르면 신원조회업무는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원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배심원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는 등록기준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재판 담당재판부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배심원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후 배심원후보자별로 해당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에 신원조회외뢰서를 송부하고,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으로부터 신원조회결과가 도착하면 이를 참고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참여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후보자 출석취소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원조회결과가 송부되어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참여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을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송부받은 자료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참여법률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폐기한다.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송부받은 자료는 배심원 자격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확인을 위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배심원 자격확인을 위한 자료는 재판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항소심으로 기록이 송부되지 않기 때문에 제1심 법원에서 당해 사건 완결시까지 배심원 자격확인을 위한 자료를 보관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마. 선정기일 출석통지 취소 및 통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한 이후에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거나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배제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법원이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 배심원후보자가 불필요하게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23조 제3항). 배심원후보자의 불필요한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므로, 출석통지 취소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07¹ 선정기일 출석의무 및 불출석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제재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고(참여법률 제2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서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선정기일 통지서의 불출석 사유 신고서 등에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선정기일에 불출석한 사유를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제도 시행 초기에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배심원 선정

Supreme Court of Korea

01 | 개요

가. 선정기일의 진행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에는 재판부 전원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참여법률 제24조 제1항).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이 갖는 비중이 크고, 재판장이 선정기일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개별 배심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재판 진행에 참고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무상으로는 참여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백사건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정기일은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모두 선정되어야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함으로써 출석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선정기일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의 편견을 밝힐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질문이 행하여질 필요와 선정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판부와 소송관계인, 배심원으로 하여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에 보다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나. 배심원후보자명부 송부 등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참여법률 제26조 제2항),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성별·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참여법률 제26조 제1항은 배심원후

보자의 정보가 검사나 변호인에게 제공될 필요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요구를 조화하여, 배심원후보자명부를 선정기일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협박이나 매수 시도를 할 가능성을 줄였고,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도 정보만을 제공하되, 출생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무상 배심원후보자명부를 가급적 늦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배심원후보자명부는 선정기일 2~3일 전에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심원후보자명부와 함께 질문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다만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표를 배부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일의 참여자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27조 제1항). 그런데 선정기일의 출석과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여 배심원후보자를 대면하는 경우에 배심원후보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피고인에게 노출되는 경우에 위협, 매수, 보복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 조항은 선정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정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배심원후보자를 다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한다면 배심원후보자의 불편이 커지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선정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선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배심원후보자의 양해를 구하여 선정기일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선정기일에서의 배심원후보자 개인 정보 보호

참여법률 제24조 제2항은 선정기일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배심원후보자의 인적정보는 일반 방청인뿐만 아니라 배심원후보자 상호간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배심

원후보자를 번호로만 호칭하여 배심원후보자 간의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참여규칙에서는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19조).

마. 선정기일 조서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3조 제1항). 참여규칙 제23조 제2항은 선정기일 조서의 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제1호)
2. 개정 형소법 제5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제2호)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및 그 출석 여부(제3호, 제4호)
4.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제5호)
5.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제6호)
6. 불선정 결정(제7호)
7. 참여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제8호)
8. 참여법률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제9호)
9. 참여법률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제10호)
10. 참여법률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제11호)
11.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제12호)

위 기재사항 중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제5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인의 배심원 선정의 판단 기준이 되고 배심원후보자가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심원을 해임할 수도 있고 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응할 정도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제6호)를 기재하는 이유도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합할 정도로 진술거부와 그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할 것이다.

한편 참여규칙에서는 개정 형소법 제56조의 공판조서의 증명력 조항을 참고하여 선정기일에서의 소송관계인의 출석 및 절차의 진행 등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다른 반대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하였다(참여규칙 제24조).

02¹ 선정기일의 개시

가. 배심원후보자 안내 및 준비

법원은 배심원 대기실에서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을 확인하고 배심원후보자명부에 따른 번호표를 교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상의에 부착하도록 한다. 배심원후보자에게는 선정기일에서 성명이 아닌 배심원후보자별 번호로만 호칭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질문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질문표를 작성·제출하게 한다.

선정기일을 진행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배심원후보자를 안내하여 선정기일이 열리는 공판정으로 이동하여 방청석에 착석하도록 한다. 출석한 배심원후보자가 많아서 모두 방청석에 착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대기실에 있는 상태에서 미리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바로 배심원석에 착석하도록 하는 방식과 같이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정기일은 배심원석이 설치된 공판정에서 진행한다.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방청석에 착석하게 하여 선정기일 진행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한 후 선정기일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선정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나. 선정절차에 관한 설명

선정기일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먼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의 개요,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에 대한 배심원후보자의 답변의무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절차는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하여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한 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 심사

(1)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 심사 시기 및 방식

선정기일에서 참여법률 제17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의 심사 시기 및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판장이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하여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한 후 그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를 심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 결정을 하고, 불선정결정 후에 그 수만큼 새로운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이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하기 전이나 또는 추첨한 직후에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를 먼저 심리한 후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배심원 직무를 배제한 후 질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은 참여법률 제31조의 배심원 선정방식에 비교적 충실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어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선정기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하게 한다. 배심원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여차피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배심원 직무의 면제를 신청할 것이라면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로 뽑힌 후에 이러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배심원후보자를 불필요하게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하여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배심원 직무 면제 사유 심사

구체적으로는 선정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된 면제신청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가 추첨되어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되면 그가 제출한 면제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심원후보자가 이전에 서면으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선정기일에 재판장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가 여전히 면제를 신청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제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재판소요기간을 알려 주고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일의 재판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된다면 위 기간 동안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정기일 통지시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예상 재판소요기간이 고지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배심원 직무 면제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서 심리한 결과 배심원 직무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20조에 따라 배심원 직무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면제신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심리를 진행할지

가 실무상 문제된다. 배심원 직무 면제 신청은 선정기일에서 구술로 할 수 있으므로, 면제를 신청할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차례로 구술 면제 신청하게 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규칙 제11조 제1항). 위와 같은 방식은 간편하고 심리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면 다른 배심원후보자가 지켜 보는 자리에서 면제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게 되므로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면제 신청을 받아 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른 배심원후보자가 그와 비슷한 면제 신청을 해 오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원 직무의 면제를 원하는 배심원후보자가 앞서 면제된 다른 배심원후보자의 면제 사유를 원용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것도 예상된다. 또한 구술로 면제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가 면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 특히 배심원후보자가 다른 배심원후보자 앞에서 경제적 형편이 너무 곤란하여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선정기일에 면제를 원하는 배심원후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면제 신청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 즉석에서 작성하게 한 후 재판장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재판장은 면제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배심원후보자를 법대 앞으로 불러 답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 밖의 배심원 직무 배제 사유 심사

참여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 및 제18조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배심원후보자가 답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참고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사실대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공통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 모두에게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피해자의 성명을 알려준 후 사건 관계자를 이미 알고 있거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이 때에 참여법률 제19조의 제척사유, 즉 대상사건의 피해자(제1호),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제2호),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제3호),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제4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제5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제6호),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제7호)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 무작위 추천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첨하도록 한다.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무작위 추첨 행위가 선정기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참여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순차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판장은 추첨된 배심원후보자의 번호를 불러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 좌석 1번 부터 순차로 착석하게 한다. 이때에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의 선정 및 불선정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몇 번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석에 착석하는지를 메모하여야 한다. 메모 방식으로는 메모지에 배심원석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도 있고, 메모지 한 장에 배심원후보자 한 명을 표시하여 배심원석과 같은 순서로 큰 종이 또는 판에 붙여 놓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선정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이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과 불선정이 반복되어 선정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후자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가 불선정되면 해당 메모지를 떼어 불선정란에 옮겨 놓은 후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메모지를 그 자리에 붙이게 된다. 이와 같은 메모와 함께 해당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사본을 찾아 둔다.

마. 방청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안내

재판장은 처음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하기 전에 방청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에게도 판사, 검사, 변호인과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 간에 이루어지는 질문, 답변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 중 불선정된 자리에 새롭게 들어간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전의 배심원후보자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선정기일 절차 진행을 지루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선정기일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재판장은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게 앞서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정기일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정기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을 모든 배심원후보자들이 경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03¹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가. 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판사, 검사,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에게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이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공정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결과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후보자를 기피신청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절차

(1) 재판장의 질문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참여법률 제17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28조 제1항 전문). 따라서 재판장이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게 된다.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필요·적절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가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심원후보자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솔직하게 밝힐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입견에 관하여 다른 배심원후보자 앞에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하여만 말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선입견에 대한 질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가 충분히 생각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실무상 재판장이 어느 정도의 질문을 해야 하는지가 논의될 수 있다. 재판장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질문 내용에 따라 자칫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재판장이 검사 또는 피고인 중 어느 일방 당사자를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판장은 선정기일에서 기본적인 질문만 하고 검사, 변호인으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정기일에서는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배심원후보자가 질문표에 기재한 답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추가 질문하거나 검사, 변호인으로 하여금 추가 질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에게 민감한 쟁점,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 관한 질문 등에 관하여 다른 배심원후보자가 알 수 없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장이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거나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배심원후보

자가 그렇다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가 읽거나 들은 기사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읽거나 들은 기사에 기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증거에만 기초하여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 배심원후보자가 재판 전 언론 보도의 내용 및 이에 기초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다른 배심원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법대 앞으로 불러내거나 서면 질문서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은 선정기일에서 질문함에 있어 질문표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다. 재판장은 성폭력 사건과 같이 배심원후보자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 피해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이 기재된 별도의 질문표에 답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정기일의 질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별도의 질문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선정기일에서 질문을 행할 때 배심원후보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그러한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를 존중하여 추가 답변을 듣지 않고 곧바로 불선정해 주는 등으로 배심원후보자를 배려해 줄 필요도 있다.

(2)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문

재판장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28조 제1항 후문).

법원은 선정기일에서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24조 제3항). 참여규칙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확인하면서(참여규칙 제20조 제1항),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재판장은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이 배심원 선정과 무관한 것이거나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하거나 특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질문,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질문, 증거를 미리 제시하고 배심원후보자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질문은 부적절하여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관한 질문이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인이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심원후보자의 가족사, 수사기관과의 관계, 건강 문제, 개인 전과 기록, 종교적 편견 등에 대한 질문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검사나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하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심원후보자의 직장 주소, 배심원후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과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한의 방식은 특정 질문 금지, 질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장이 질문을 하지 않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선정기일의 질문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진행되어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 등의 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선정질문 시간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이 각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배심원후보자 전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각 10분 내지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검사나 변호인이 이유부기피 또는 무이유부기피될 것이 예상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세하게 질문하여 선정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배심원후보자의 의무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참여법률 제28조 제2항). 배심원후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해임될 수 있고(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04 |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가. 의의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28조 제3항 전문). 참여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불선정할 수 있는 배심원후보자의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이 배심원의 불공평한 판단 우려 등 특정한 이유에 기초하여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하는 기피신청을 통상 “이유부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라고 하는데, 참여법률에서는 “이유부기피신청”이라는 용어 대신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절차

이러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은 공평하고 불편부당한 배심원 구성을 위하여 배심원후보자 중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특정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그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부적격자라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 불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후보자가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재판장 설명과 선서에 따른 배심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배심원후보자가 질문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답변 내용,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및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표에 기재된 답변만으로 배심원후보자를 불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통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여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참여법률 제2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28조 제3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참여법률 제29조 제2항). 다만, 기피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그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

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불선정된 배심원후보자는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재판장은 기피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배심원후보자에게, ① 선정절차는 공정한 배심원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불선정되더라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불선정된 이유를 물어보거나 추측하려고 하지 말 것, ③ 검사와 변호인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이유부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절차를 진행할 때 배심원후보자가 기피사유를 듣게 되면 반발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는 자신을 기피한 검사나 변호인에게 적대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자는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지 위하여 그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 증가로 인하여 선정기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후보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에 기하여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불선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을 고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심원후보자를 법정에서 내보내거나 법대협의 방식으로 판사, 검사, 변호인 간에 진행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는 경우 기피로 인하여 불선정된 배심원후보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배심원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되더라도 기피신청한 검사나 변호인에 대한 편견 없이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절차의 진행방식에 관하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판단 기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배심원후보자를 불선정하는 일반 원칙은, 배심원후보자가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재판장 설명과 선서에 따른 배심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즉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①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사유가 존재할 것과, ② 그와 같은 사유가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그로 인하

여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위와 같은 사유와 무관하게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배심원의 답변 태도 및 내용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 구체적 기준은 법원이 개별적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청 사유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부기피신청 사유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는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

① 명시적 선입견(Actual Bias)

명시적 선입견이란 배심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편견 없이 배심원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배심원후보자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만 기초하여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경우 또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사건에서 배심원후보자가 자신의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추정적 선입견(Implied Bias)

추정적 선입견이란 배심원후보자와 당해 사건 및 피고인과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공정하고 편견 없이 배심원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리상태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송관계인과 가까운 친척이거나 고용, 임대차, 채권·채무, 동업 관계 등에 있는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부적절한 의견이나 신념을 가진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이해관계와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사건 자체나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가지는 경우 및 검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감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실무 운용

참여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는 대부분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에서의 답변 내용 및 태도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는지를 추단하는 것으로, 배심원후보자에게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

므로 이유부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검사, 변호인이 이유부기피신청권을 많이 행사하여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 등의 절차에서 검사, 변호인에게 이유부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안내하여 이유부기피신청 자체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05 | 무이유부기피신청

가. 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무이유부기피신청(peremptory challenge)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참여법률 제30조 제2항). 다만 기피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과는 달리 무이유부기피신청은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① 이유를 제시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된 경우에 즉각적인 구제 수단이 되고, ②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된다. 반면 배심원 선발의 목적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직관을 만족시키거나 어느 한 당사자에게 호의적인 배심원을 선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닌데, 어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하여 그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하고, 그 밖에 다른 이유를 들어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려는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나.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

(1) 원칙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이 7인인 경우 4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이 5인인 경우 3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30조 제1항).

(2)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참여법률에서는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별로 참여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져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해야 하고 선정기일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만 참여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제약을 받게 되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피고인별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무이유부기피신청을 공동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참여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별로 참여법률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21조 제2항). 참여규칙에서는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의 하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백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3인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별로 3인 이상의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법원이 정한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합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21조 제3항).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고인 2인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	3명	4명	5명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 합계	6명	8명	10명
	검사가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 합계	6명	8명	10명
피고인 3인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	3명	4명	5명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 합계	9명	12명	15명
	검사가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 합계	9명	12명	15명

(3) 실무 운영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범위에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무이유부기피신청 순서 및 방식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 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참여법률 제30조 제3항). 무이유부기피신청은 검사나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배심원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하는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검사에게 먼저 행사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은 검사 → 변호인 → 검사 → 변호인의 순서로 행사하게 된다.

검사나 변호인은 자신의 차례에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이 자신의 차례에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들을 승인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어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때에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나 변호인이 자신의 차례에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남아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상대방이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면 검사나 변호인은 다시 자신의 차례에 남아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여법률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무이유부기피신청권 행사 순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의 행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모든 당사자가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차례로 행사하게 되면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가장 많이 가진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의 행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가장 많이 가진 검사가 상대방을 바꾸어 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2명인 사건에서는 검사 → 피고인 1 → 검사 → 피고인 2 → 검사 → 피고인 1 → 검사 → 피고인 2의 순서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공동피고인이고 변호인도 1인으로 피고인들을 위해 함께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함에 있어 굳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 실무 운영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의 선정 및 불선정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몇 번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석에 착석하는지를 메모하여야 하는데, 특히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유부기피신청과 달리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재판장은 검사나 변호인이 무이

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몇 번째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자칫 참여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이유부기피신청권 행사 순서도 메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무이유부기피신청은 검사부터 진행하게 되지만, 일부 배심원후보자가 불선정되어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절차를 진행할 때는 종전에 마지막으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한 측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여 그 상대방부터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 절차는 배심원후보자를 법정에서 내보내거나 법대협의 방식으로 판사, 검사, 변호인 간에 진행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무이유부기피신청된 배심원후보자는 불선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과 달리 배심원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배심원후보자의 면전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무이유부기피절차의 진행방식에 관하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무이유부기피신청의 한계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러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편견이나 의도적 차별에 기초하여 행사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Batson 원칙에 따라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반대하는 측이 이의제시하여 신청자에게 그 이유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정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의도적 차별이 아닌 다른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 Batson 판결의 실시와 같이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성별, 계층 등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행사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이유부기피에 대한 신청인의 이유 설명의무 및 상대방의 이의제기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참여규칙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참여법률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었다(참여규칙 제21조 제1항). 이러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실무가 운영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 예비배심원을 두는 경우의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 추가 여부

참여법률이나 참여규칙에서는 예비배심원을 두는 경우에 추가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예비배심원을 두는 경우에도 참여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배심원 수를 기준으로 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내에 대하여만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06 |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선정절차 진행

처음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 중 불선정된 자리에 새롭게 들어간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전의 배심원후보자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선정기일 절차를 지루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선정기일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재판장은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게 앞서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장이 이러한 질문을 마친 후에는 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간단히 질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및 무이유부기피절차를 진행한다(참여법률 제31조 제2항).

07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

가. 개요

검사나 변호인 모두가 더 이상 행사할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이 남아 있지 않거나 연이어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후보자가 확정된다(참여법률 제31조 제3항).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참여법률 제31조 제3항 전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은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정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배심원 번호 부여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참여규칙 제30조 제1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었을 때 착석한 배

심원석의 좌석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공판이 시작되면 그 순서대로 다시 착석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이러한 번호 부여 방식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한다(참여규칙 제30조 제1항). 만약 배심원이 7명이고 예비배심원이 2명인 사건에서 배심원, 예비배심원 순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1번부터 7번까지는 배심원, 8번과 9번은 예비배심원으로 정하게 되면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를 알리지 않더라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었을 때 착석한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면 배심원후보자명부에 따른 번호표를 회수하고 배심원 번호표를 새로 교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상의에 부착하도록 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배심원 수보다 예비배심원 수가 적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참여사무관 등 또는 실무관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추천함에서 예비배심원 번호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사실 불고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이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공판기일의 증거조사에 집중하지 않는 등 자칫 직무 수행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31조 제4항). 참여규칙은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 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22조). 당사자 입장에서 예비배심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알아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예비배심원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자칫 간접적으로 예비배심원 본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예비배심원 사이에 순번을 정해 두지 아니하면 배심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예비배심원 중 누가 배심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순번을 정하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31조 제3항 후문).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종결 직후 평의가 개시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알리게 될 것이다.

01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

가. 해임사유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계속 재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국민참여재판의 신뢰성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그 구체적인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참여법률 제42조 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제1호)
-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제2호)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참여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제3호)
- ④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제4호)
- 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제5호)

- ⑥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제6호)

나. 해임절차

(1) 해임신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5조 제1항). 위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해임결정을 할 수도 있다(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2) 심리절차

법원은 해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참여법률 제32조 제2항).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사본의 송달 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해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에 법원사무관등은 해임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5조 제3항). 다만, 해임신청이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임 대상 배심원이 누가 해임 신청하였는지 알게 되면 해임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해임 신청자에 적대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해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심원이 알 수 없도록 해임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임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법원은 해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32조 제2항). 해임 결정을 위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해임 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그 답변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절차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해임 대상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심문

기일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한 별도로 해임 대상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해임 결정

심리 결과 해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결정문을 작성하여 해임 대상자 및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참여법률 제32조 제3항), 결정문에는 해임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해임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해임신청된 경우에 공판기일에서 해임 결정하여 해당 배심원을 귀가하도록 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서 해임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02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은 참여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의 직무 수행 부담을 면해 주어야 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33조 제1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건번호,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사임사유를 적어 사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사임신청할 수 있고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6조 제1항, 제3항).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중병·상해 또는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의 직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는 앞서 살펴 본 배심원 직무 면제 사유를 고려하되, 사임 판단기준은 당해 사건의 특정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이 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사임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참여법률 제

33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은 해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26조 제4항). 위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고, 통지의 증명은 법원사무관등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03¹ 배심원의 추가 선정

가. 의의

참여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심원을 해임하거나 참여법률 제33조에 따라 배심원이 사임하게 되어 배심원이 부족하게 되면 예비배심원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에는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한다(참여법률 제34조 제1항).

그러나 배심원의 추가 선정으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다른 배심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34조 제2항). 이때에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하려면 배심원 선정기일을 새로 지정하여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참여법률 제34조 제2항을 널리 활용하게 되면 실무상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심원의 해임·사임으로 인하여 배심원 수가 6인, 8인의 짝수가 되는 때에는 유·무죄의 다수결 평결에 있어 유·무죄 의견이 동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잔여 배심원만으로 재판진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배심원 수가 짝수가 되어 유·무죄 다수결 평결불능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배심원 선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 유·무죄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유·무죄 의견이 동수에 이를 가능성이

적으므로 잔여 배심원만으로 재판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배심원 추가 선정시 무이유부기피신청

참여법률에서는 배심원 추가 선정시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심원 추가 선정시에는 별도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배심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이루어지는 배심원 추가 선정은 그 성질상 당초에 이루어진 배심원 선정절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와 변호인은 참여법률 제34조에 따라 배심원을 추가 선정하는 때에 각자 참여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서 선정기일에 행사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21조 제4항). 다만 참여규칙은 배심원 추가 선정시 행사할 수 있는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의 상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예를 들어 배심원이 9명인 사건에서 선정기일에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검사나 변호인은 추가 배심원 1인을 선정할 때에 최대 다섯 번까지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이유부기피신청권 행사로 인하여 배심원단 구성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검사, 변호인으로 하여금 무이유부기피신청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공판절차의 갱신

참여법률은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참여법률 제45조 제1항). 다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계속 참여하였던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재판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은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공판절차의 갱신 방법과 관련하여 공판절차의 갱신의 본래적 의미는 공판정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이와 같은 원칙적인 갱신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다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일부 실무의 예와 같이 형식적으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의 사건의 쟁점과 증거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그 임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교체로 인한 공판절차갱신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공판절차의 갱신 방법은 실무 운영을 통하여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증거조사 이전 단계의
공판절차 진행

Supreme Court of Korea

01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가. 공판기일 및 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통지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기일에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형소법 제267조 제2항, 제3항).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을 개정 요건으로 요구하면서(참여법률 제39조 제1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기일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38조). 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이므로(참여규칙 제29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배심원 선정기일에서(배심원 선정기일을 마친 후) 공판기일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배심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였다는 취지를 선정기일 조서에 기재하면 될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증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 공판정 외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거나 현장검증이 이루어지는 등 법정외 증거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배심원 등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국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조서 등 서류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배심원이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참여규칙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참여규칙 제36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므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여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부여한 변호로만 불리워지므로(참여규칙 제30조 제2항), 공판조서에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조서 기재사항인 개정 형소법 제5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변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31조).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정 순서

현행 형사재판의 운영 실무는 구속사건의 경우 판사가 입정하여 사건을 호명하고 검사, 변호인의 출석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입정시키고 있다.

실무상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정 순서가 논의될 수 있다.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면 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참여법률 제39조 제1항에서는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심원·예비배심원 → 판사 → 피고인 순으로 입정하여야 할 것이다.

02¹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수의를 입고 재판받는 모습은 배심원에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의 기일에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사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선입견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미결수용자가 법정에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복(미결수용자의 자비부담의류)을 착용할 수 있으나[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제407호) 제2조], 실제로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재판받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 등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¹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2조 제1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04 | 재판장의 모두설명

가. 개요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2조 제2항). 이러한 설명은 변론 종결 후 평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참여법률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장 최종설명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배려하는 차원의 설명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 배심원 선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판장은 그 재량에 따라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되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을 시작하면서 배심원에게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판장 설명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장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절차의 단계에 따라 배심원에게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명사항

(1) 국민참여재판 절차

재판장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절차, 판사·검사·변호인의 역할,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2) 배심원 유의사항

배심원이 공판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설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배심원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고지한다.

실무상 배심원 유의사항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배심원 상호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 것
- ②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지 말 것
- ③ 재판절차 외에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말 것. 구체적으로는 신문,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당해 사건 기사를 읽지 말 것, 범죄 장소 또는 사건 관련 장소를 방문하거나 조사하지 말 것 등이다.
- ④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를 알게 된 경우

에는 즉시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릴 것

- ⑤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지 말 것

(3) 사건의 주요 쟁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그 후 진행되는 심리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주요쟁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의 쟁점 정리와 중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원칙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증거법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와 소송관계인 의견 진술의 차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 증언의 신빙성, 입증책임 등에 관한 설명은 배심원의 증거 판단을 도울 수 있다.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증인이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야 하고 배심원은 그 질문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답변이 무엇일까 추측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 운영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발된 국민들은 낯선 소송절차와 법률용어로 인하여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참여규칙은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및 변호인에게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참여규칙 제28조). 재판장은 위 조항에 기초하여 쉬운 용어로 재판장 설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보다 평이한 용어로 변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05 |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함을 유의하

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83조의2). 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84조).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출석한 대표자, 특별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리인과 법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서 확인해야 한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제18조 제1항).

06 | 모두진술

가. 검사의 모두진술

개정 형소법은 종래 임의적인 절차로 되어 있던 검사의 모두진술절차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였다. 즉 개정 형소법은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형소법 제285조).

검사가 하는 모두진술의 원칙적인 모습은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의 낭독이다. 피고인은 이미 공소장 부분을 받아보아 공소의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공판정에서 이를 낭독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은 특히 참여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실무운영이 필요하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검사가 모두진술에서 공소장을 단순하게 낭독하는 것 이외에 공소제기의 배경, 사안의 중요성과 법률적 쟁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검사가 공소장 부분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인 공판 진행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굳이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판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안이 단순하고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으면서도 유사한 동종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있는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그대로 낭독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집중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재판장은 이러한 사건에서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기초로 그 요지만을 간략하게 진술하도록 소송지휘를 함이 바람직하다.

공판준비절차는 어디까지나 공판기일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불과하므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절차진행을 생략하거나 축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절차는 공판기일의 서막을 여는 절차이므로 비록 공판준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개정 형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가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개정 형소법 제286조 제1항). 이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제도(개정 형소법 제266조의2)의 도입과 더불어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위해 재판장은 개정 형소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형소규칙 제127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모두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8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권은 비단 이 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실무상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법률상의 감경사유나 정상에 관한 사정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나 기일연기신청 등 절차상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에 임하는 피고인의 입장이나 심경 등도 진술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중복되거나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99조).

이 절차는 일반적인 공판절차에서뿐 아니라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07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관한 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87조). 개정 형소법은 피고인신문을 원칙적으로 증거 조사가 끝난 다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증거조사 이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그 이후 이루어지는 증거조사절차에서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개정 형소법 제287조 제2항). 개정 형소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를 들면 검사가 피고인이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제한하여야 한다.

쟁점정리절차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 절차에서 드러난 주장 및 쟁점의 범위 안에서 향후 증거조사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재판장으로서 이 절차에서 피고인·변호인 진술의 논리적 모순 등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등 증거 조사에 앞서 법원이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판준비절차, 특히 공판준비기일까지 거친 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이 단계에서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쟁점을 요약하여 재확인하고 그 밖에 새로운 쟁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일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08 |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개정 형소법 제286조의2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43조). 특히 이 조항은 피고인이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면서 나머지는 부인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09 |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개정 형소법은 구 형소법에 규정된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이외에 영상녹화를 추가하면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형소법 제56조의2 제1항).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0조 제1항).

한편 법원은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40조 제2항).

10 | 통상절차 회부

피고인의 질병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심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불편이 커지게 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심리가 요구되어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상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11조 제1항).

법원은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같은 조 제2항),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참여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참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사본의 송달 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신청인의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통상절차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통상절차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한편 참여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한 통상절차 회부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대상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다가 공소장 변경 이후 통상 재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와 재판절차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법률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당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통상절차 회부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11조 제4항).

통상절차 회부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그 취지를 전산입력한다.

01 |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가. 개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 미국 등 배심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원래 배심원의 신문요청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신문요청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원이 신문요청권을 가질 때에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배심원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거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관의 통제 하에 배심원의 신문요청권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이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원이 직접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요청 시기

배심원이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중 갑작스럽게 신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방해받을 수 있다. 참여규칙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신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규칙 제33조 제1항). 만약 배심원이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진행 도중 신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질문을 적어 두었다가 신문이 종료된 직후에 제출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요청 방법

배심원의 신문 요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33조 제1항).

당사자의 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신문을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요청 의사를 밝힌 배심원에게 서면을 교부하여 신문사항을 작성하도록 한 후 참여사무관 등을 통하여 서면을 제출받게 될 것이다. 배심원의 필기가 허용된 경우에는 미리 교부된 서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의 신문요청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은 최초 설명뿐만 아니라

개별 신문이 종료된 후 배심원에게 신문을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재판장의 통제

배심원의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그대로 허용하면 심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고, 부적절한 질문으로 인하여 다른 배심원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 참여규칙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규칙 제33조 제2항).

재판장이 배심원의 신문 요청을 받아들여 신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므로 배심원이 제출한 서면을 별도로 기록에 편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판장이 배심원의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서면을 기록에 편철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배심원에게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장은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하거나 질문이 받아들여졌다면 증인이 어떠한 답변을 하였을지에 관하여 추측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02¹ 배심원의 필기

가. 개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미국 등 배심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심리 중 배심원의 집중도 증가, 배심원의 기억력(특히 평의 단계에서의 기억력 향상), 평의 도중 법원에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횟수 감소, 배심원의 의욕과 만족감 향상을 이유로 배심원의 필기를 허용하는 추세이다.

나. 필기 허가

피고인신문 또는 증인신문의 내용뿐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필기하여 평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판장은 배심원의 필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명에서 배심원에게 필기를 허용하고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재판장이 필기 자체는 허용하

면서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심원에게 그 취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필기를 허가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참여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34조 제1항).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참여규칙 제34조 제2항). 또한 필기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증언이나 재판 진행을 주의 깊게 듣거나 지켜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변론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필기를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석에 필기도구와 필기용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인 수가 많아 필기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트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 날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마다 필기용지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제공할 수 있다. 배심원이 필기한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에 분실하거나 배심원의 필기 내용이 알려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심원이 필기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마다 배심원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03¹ 배심원의 의무

가. 절차상 의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당해 국민참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평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①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②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③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④ 참여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위와 같은 절차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해임될 수 있을 뿐 아니라(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나아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참여법률 제58조 제1항).

재판장은 배심원의 절차상 의무에 관하여 최초 설명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휴정하거나 공판기일이 종료되는 때마다 유의사항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규칙에서도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 즉 평의 시작 전 배심원 사이의 논의 금지 의무 및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32조).

나. 배심원 등의 금품수수 금지(참여법률 제59조)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 금지(참여법률 제58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장 대표적인 비밀로는 참여법률 제47조에 규정된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의 판사 또는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를 들 수 있겠다. 그 외에 어떠한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례의 축척을 통하여 분명하여질 것이다.

한편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58조 제2항 단서).

제 6 장
증거조사절차

Supreme Court of Korea

공판중심주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고 올바른 증거조사의 실시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실제 법정에서 살아 있는 공방이 구현됨으로써 예단배제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실질적 증거조사 등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08. 1. 1.부터 시행되는 변화된 증거조사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증거의 신청

- ➔ 당사자의 증거 제출

증거의 결정

- ➔ 증거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서류나 물건을 제시
- ➔ 상대방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과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 진술
- ➔ 증거의 채부에 관한 결정

증거의 조사

- ➔ 증거신청인의 서류나 물건에 대한 개별적 지시 설명
- ➔ 증거신청인이 원칙적으로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증거물을 제시
- ➔ 직권 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증거물을 제시

증거조사 이후

- ➡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증거신청권의 고지
-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위에서 본 각 절차는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기준으로 본 것이기는 하지만, 증인, 검증, 감정 등의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증거의 신청, 상대방의 의견진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의 실시,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등의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의하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인 법관과는 달리 일반인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의 영향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44조).

그런데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이전에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공판진행 도중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를 하는 경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어떤 방법으로 심리에서 배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단 ① 미국의 예와 같이 법대 협의(sidebar conference)를 진행하는 방법,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하고 재판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준비절차실 등 법원 내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③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평의실 등 법정 외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대기하다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가 끝난 후 다시 입장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의 제시와 의견진술이 끝난 후에 법원은 당해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형소규칙 제134조 제1항).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은 증거신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증거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증거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당해 증거와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 증거조사의 요부에 관한 의견을 듣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은 당해 증거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거신청인이 명시한 입증취지와 상대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쟁점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증거만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증거, 쟁점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 사실인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 증명이 완료되었거나 명백한 사실에 대한 증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움이 명백한 증거, 조사가 불가능한 증거 등에 대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대한 증거신청은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증거조사는 쟁점사항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증거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증거신청인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관행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집중심리가 필요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러한 요청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증거신청은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여서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배심원에게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

증거결정은 공판절차에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서 당사자의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법원의 증거결정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고지되어

야 한다. 종래 실무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각결정을 구두로 고지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거결정은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것이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증거기록에 올바르게 편철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증거가 증거능력의 관문을 통과하여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고,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신청된 증거 중 채택하는 증거와 채택하지 않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채택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에 나아가야 한다.

01 |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 물건,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증거신청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91조 제1항). ‘개별적 지시·설명’은 증거조사 절차의 일부로서 증거신청인이 자신이 제출한 개개의 증거를 특정하면서 증거서류나 물건과 당해 사건의 쟁점사항과의 관련성, 입증취지 등을 진술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02 | 증거서류의 낭독 또는 증거물 제시

증거신청인은 증거에 대한 개별적 지시·설명에 이어서 증거가 서류인 때에는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개정 형소법 제292조 제1항), 증거가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92조의2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증거물을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292조 제2항, 제292조의2 제2항). 증거물과 증거서류의 성격을 모두 갖는 증거물인 서면에 대해서는 제시와 동시에 서면을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낭독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개정 형소법 제292조 제3항), 이 경우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형소규칙 제134조의6). 이러한 요지의 고지는 증거서류의 내용 중 입증취지와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목격진술 중 폭행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본질적인 부분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서류 전체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거나 증거서류의 내용 자체를 법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 전부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요지 고지의 정도는 개개의

사건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서류의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및 증거물 제시의 주체는 증거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증거신청인이고, 직권조사인 경우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다. 다만 재판장은 증거신청인, 소지인 또는 재판장을 대신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내용을 고지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92조 제4항 및 제292조의2 제3항).

한편 재판장은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낭독이나 내용의 고지보다 열람이 더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92조 제5항).

여기에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허용되는 ① 낭독, ② 내용의 고지, ③ 열람 중 어떤 방법을 원칙적인 형태로 상정하고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거서류의 낭독은 증거조사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게 할 것이므로 실무상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사방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관계인의 공방과 증거조사를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평의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증거서류가 낭독되지 않는다면 배심원이 공판정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서류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방식은 ‘낭독’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낭독에 의한 증거조사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여 오히려 배심원의 증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견해도 있다. 향후 증거서류의 효과적 조사방식에 관한 적절한 실무 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증거서류를 낭독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공판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사실상 자백하면서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증거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중 피고인이 자백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부분만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재무제표, 영업장부 등과 같은 증거서류의 경우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내용을 고지하는 것보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때에 배심원에게도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배심원 각자가 증거서류를 차례로 돌려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실물 화

상기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배심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낭독에 의하되, 사건의 성격, 증거서류의 성격 등에 따라 내용의 고지 또는 열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V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Supreme Court of Korea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개정 형소법 제296조 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은 증거조사의 절차뿐 아니라 증거조사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의 실시, 증거능력의 유무 등이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은 증거조사가 법령의 위반이 없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다(형소규칙 제135조의2 본문). 다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하고(형소규칙 제137조), 구술로도 할 수 있다(형소규칙 제176조 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형소규칙 제138조).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소규칙 제139조 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증거조사 후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의 일부나 전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때에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형소규칙 제140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항고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부적법한 항고가 제기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개정 형소법 제407조), 이 경우 즉시항고로 인하여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항고기각결정일 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아니다.

01 | 일반론

증인신문은 증인의 증언내용뿐만 아니라 진술할 때의 표정, 태도, 목소리까지 법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다. 그럼에도, 실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방법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와 같은 증거서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증거서류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만 사건관계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그 내용도 주로 문제된 증거서류의 진정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실무관행으로 말미암아 형사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인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실무가 서면심리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의 입증은 증거서류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신문내용도 증거서류의 진정성립 여부가 아니라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02 | 증인신청과 증거결정

증인신문도 증거서류와 같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래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할 경우에 비로소 검사로 하여금 증인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되지 않은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증거신청이 있더라도 입증취지 등을 엄격하게 물어 그 채부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증대상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본증거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인 증거서류가 아니라 원본증거인 증인신문이 원칙적인 입증방법이라 할 것이고, 중요 참고인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최초의 증거신청단계에서부터 진술조서가 아닌 증인신문을 신청하도록 실무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개정 형소법에 의하면 증거서류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 방법이 낭독이어서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활한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진술조서의 증거신청을 채택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집중심리의 취지를 구현하고 증인 상호 간 대질신문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증인 전원을 일괄·집중 신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증인을 분산하여 심리하던 종래의 관행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검사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증인을 한 기일에 불러 신문하는 실무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증인이 한 기일에 신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인 경우에도 단기간 내에 증인신문을 위한 속행기일을 지정하여 일괄신문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03 | 증인의 출석 확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2~3일 내의 단기간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인 출석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개정 형소법은 증인의 출석 확보를 위해서, ① 소환방법을 다양화하고, ② 증거신청인에 대하여 증인 출석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였으며, ③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여러 명의 증인이 사전 계획에 따라 제때에 출석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04 | 증인신문의 방법

형소규칙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나 신원이 보장되어야 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등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규칙 제66조). 법원의 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형소규칙 제67조).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신청인, 상대방,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 검사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하여금 장문단답식의 답변이나 유도신문에 의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증인신문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초반에 증인으로 하여금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고, 그 후 개별적인 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실무관행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동의한 진술조서의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적 증인신문은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심리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증인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적법하게 마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 형식적인 증거능력 부여 위주의 증거조사절차를 실질화하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법정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불구속사건에 있어서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준하여 충분한 보충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

Supreme Court of Korea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을 위한 심증뿐 아니라 양형 판단을 위한 심증도 법정에서 형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양형심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일 진행 방식은 피고인의 자백 여부 및 사안의 경중, 그리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자료 중 양형자료가 포함되어 이미 상당부분 제출되어 있는지,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 또는 법원이 주도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로 넘어가면서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이후 절차는 양형심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좋다. 그럼으로써 당사자에게 양형심리절차를 진행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등 사실상 공판절차가 이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공판절차가 유·무죄 심리 절차와 양형심리 절차로 이분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경우 자백하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양형심리를 진행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심원으로 하여금 재판장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인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성요건적 사실 이외에 중요한 양형인자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사를 물어 만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부분에 관한 양형심리를 원한다면 그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검사는 양형자료라는 명목으로 증거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절차는 되도록 재판부의 유·무죄에 관한 심증이 형성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에도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에 법정에서 실질적인 양형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양형심리로 인하여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유·무죄에 관하여 예단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법정에서의 양형심리절차에서 피해회복 여부나 전과, 특히 동종 범죄경력 및 그 범행내용 등 기본적인 양형인자를 심리함에 있어 그러한 양형인자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배심원으로 하여금 선입견이나 편견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재판부에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나타나는 양형인자 보다 더 다양한 양형인자를 확인함으로써 적정한 양형에 이르기 위해서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교부

하여 충분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이익에 기초하여 양형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여법률은 판결 선고를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참여법률 제48조 제1항), 법원은 판결전 조사보고서가 변론 종결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장으로서의 당해 사건에서 심리가 필요한 양형인자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적절한 소송지휘 내지 석명권의 행사를 통해 필요한 양형인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기록 일체를 양형자료 또는 참고자료라며 제출할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3자적인 객관적 입장에서 재판한다는 재판업무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지나치게 전면에서 양형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판절차가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심리절차로 이분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양형심리방식을 적용하거나 양형심리만을 이유로 기일을 속행하는 것보다는, 현행의 실무보다 좀 더 신중하고 자세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실상 공판절차가 이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8장
증거조사절차 완료 이후

Supreme Court of Korea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개정 형소법에 따른 피고인신문은 증거방법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과 쟁점을 정리하는 기능을 중시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증거방법으로서의 피고인신문 기능이 강조되다 보면 자칫 공판절차가 피고인의 자백을 얻기 위한 절차로 전락하거나 또는 공판절차가 수사절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피고인신문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모두절차를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정리된 쟁점에 관한 증거조사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비로소 피고인신문에 나아가게 되므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법원에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래의 피고인신문과는 그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양형심리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별다른 필요 없이 장황하게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번복하여 자백을 받아내려 하거나 또는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피고인신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신문절차가 개정 형소법이 추구한 피고인신문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종래 마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라는 오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하던 방식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피고인은 모두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절차에서 특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을 것이고, 그 밖의 증거서류나 증인 등의 조사를 통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짐으로써 주요 쟁점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이 모두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

게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요컨대 소송경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소송경제를 도외시한 채 소송절차를 운영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실한 절차 운영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라는 두 이념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의 형태도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절차가 마쳐진 후에 이미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의 피고인신문은 많은 경우 무의미하다.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역시 기왕의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진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다만 그 밖에 정상관계사실에 관하여 상세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 296조의2).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종료한 후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302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는 공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당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주장 정리와 그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 적용될 법령, 주된 양형요소와 엄정한 형 선고의 필요성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적정한 형의 선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한 결론적 주장을 실질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 의견 진술은 법원과 배심원에 대하여는 사건의 쟁점과 양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적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적용될 법령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양형 요소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에는 검사의 실질적인 의견진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 · 변호인의 의견 진술

Supreme Court of Korea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형소법 제303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사건에 관한 최종적 의견의 개진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다소 반복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심정과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였다는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재판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9장

재판장의 설명 · 평의 · 평결 ·
양형 토의 · 판결 선고

Supreme Court of Korea

01 | 개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도 설명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46조 제1항).

참여법률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장 설명은 배심원이 올바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배심원의 평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설명에 포함시킬 사항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02 | 재판장 설명의 내용

가. 참여법률 제46조 제1항의 “그 밖의 유의할 사항”

실무상으로는 참여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실시할 “그 밖의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변론 종결 후 재판장 설명은 재판장의 모두 설명과 비교할 때 배심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므로 어떠한 사항을 변론 종결 후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여규칙은 재판장이 참여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설명할 “그 밖의 유의할 사항”으로는 ① 개정 형소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②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③ 개정 형소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④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및 제4호(참여법률에 따른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에 규정된 배심원의 각 절차상 의무, ⑤ 평의 및 평결의 방법, ⑥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37조 제1항).

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요청

참여규칙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장 설명에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참여규칙 제37조 제2항). 참여규칙에서는 서면 요청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언제라도 법원에 대하여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의 시점 중에서 재판장이 정한 때까지 제출하도록 실무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 필요성과 설명 내용을 판단하여 재판장 설명에 포함할 지 여부를 재량으로 정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설명을 요청한 법률적 사항이 당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설명과 중복되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요청 사항을 설명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누구의 요청으로 설명하는지를 배심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 관련 문제

택일적, 예비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택일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순서에 관하여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고 평결서에 안내 문구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유·무죄 평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고, 이러한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공소장 변경도 필요하지 않다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축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뿐 아니라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재판장이 축소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배심원이 이에 관하여 평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03 | 재판장 설명의 방식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 설명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장 설명은 도입부, 배심원의 의무, 사건의 쟁점, 증거, 적용 법률, 입증책임, 마무리와 같이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각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빠짐 없이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장 설명을 미리 정리하여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낭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재판장 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재판장 설명에 포함할 내용을 찾고 내용 및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재판장 설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자칫 중요한 사항이 설명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명될 우려가 있다.

참여규칙에서는 배심원이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배심원에게 재판장 설명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41조 제2항, 제3항). 참여규칙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판장 설명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판장 설명서 사본의 제공은 소송관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에 앞서 배심원에게 재판장 설명서 사본을 제공하여 재판장 설명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에게 재판장 설명서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은 재판장 설명을 들으며 눈으로 서면 사본을 읽을 수 있게 되므로, 배심원이 재판장 설명을 듣는 도중 필기에 신경 쓰느라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판장 설명서 사본에 포함되는 내용은 재판장이 설명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사본을 만드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과도한 강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때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배심원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배심원으로 하여금 검사나 피고인 어느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 및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과 같은 원칙을 설명하는 때에는 표현 방식에 따라 자칫 배심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장 설명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01 | 개요

가. 국민참여재판의 평의 및 평결의 특징

평의는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위하여 진행되는 협의를 의미하고, 평결은 당해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한다.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방식은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참여법률 제정 과정에서 논의의 핵심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위헌 주장도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수정한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입법과정과 입법목적을 반영하듯이 국민참여재판의 평의 및 평결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진행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결하는데(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본문), 이는 배심제적 평의 및 평결 방식에 해당한다. 다만, 순수한 배심제적 평의 및 평결에 수정을 가하여 법관의 관여 가능성을 두었는데, 즉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단서).

참여법률은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반드시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46조 제3항). 이는 평의에 법관의 참여를 인정한 것으로 참심제적 평의 방식이라고 하겠으나, 판사가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같은 항), 참심제적 평결 방식에 수정을 가하였다.

비록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평의 등의 과정에서 판사 또는 배심원의 개별적 의견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평의의 비밀이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고 평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배심원에게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고(참여법률 제47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58조 제1항).

나. 평의 및 평결의 운영

(1) 평의 기일 지정

배심원의 부담을 줄이고 공판중심주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론이 종결된 직후 연속하여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규칙에서는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되,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참여규칙 제39조 제1항).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늦게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월요일에 평의 기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배심원 사이의 의견 차이가 심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평의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평의의 속행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평의를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재판장은 평의 기일을 적절하게 지정함으로써 평의가 속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결에 의한 평결이 가능한 이상 1일 이상 평의가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평의의 속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평의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배심원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귀가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격리 조치를 병행하여 평의 내용의 노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배심원 대표가 평결이 임박하였다고 알려 온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평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의실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참여규칙 제39조 제2항 전문). 평의 등의 비밀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의실에서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다.

재판장은 평의의 비밀 보장과 배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참여규칙 제39조 제3항). 다만 주 2회 공판

등으로 법원경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의 경우에는 참여규칙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배심원 대표가 평의 도중 재판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각 통지한 후 이에 따라 법원이 평의실 출입을 허가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참여규칙 제39조 제4항).

(3) 그 밖의 사항

배심원이 재판 중 재판장의 평의 사용을 허가 받아 필기한 서류 또는 평의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등 당해 재판과 관련된 서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평의 과정이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되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하였다(참여규칙 제39조 제5항). 배심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한 예비배심원이 소지하고 있는 필기 서류의 경우 평의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폐기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여법률 제35조 제1호에서는 예비배심원의 임무가 중국재판을 고지한 때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론종결 후 중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법원이 예비배심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비배심원을 두는 취지는 배심원의 평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배심원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예비배심원은 중국재판이 고지되기 전까지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중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38조 제1항). 만약 예비배심원이 위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참여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은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장으로 하여금 배심 평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비배심원의 의무, 즉 평의 시작 전 논의 금지, 재판절차 외에서의 정보 수집 금지를 환기시키도록 하였다(참여규칙 제38조 제2항).

02¹ 평의 및 평결

가. 배심원이 평의에 참여할 의무

(1) 개요

국민참여재판의 평의는 배심원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란, 배심원이 다른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방법으로 평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거나 다른 배심원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앉는 행위, 평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평의 내내 자거나 책을 읽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이 잘못된 논리를 고집하거나 법과 증거의 해석에 있어 다른 배심원과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평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당 기간 평의에 참가하여 토론한 배심원이 평의를 더 진행하더라도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평의 거부로 인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2) 평의 참여 의무 위반 여부 심리

만약 국민참여재판의 평의 과정에서 배심원 직무 수행에 열의가 없거나 스트레스, 배심원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평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평의에 임하는 배심원이 있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가 실무상 논의될 수 있다. 배심원이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는 배심원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참여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심원이 비록 평의실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평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참여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당해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평의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재판부도 참여법률에 정한 경우가 아닌 한 평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배심원 대표에게 평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재판부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배심원 대표로부터 배심원 중 일부가 평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한다는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을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여 배심원이 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성실하게 평의에 임하는 경우에는 해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후 평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심원이 계속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심원이 평의에 참여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해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법률 제32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배심원 해임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배심원이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는 검사와 변호인도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의 중의 배심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평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배심원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평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해당 배심원을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 결과 배심원이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당해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 해임 결정에는 그 이유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면 될 것이다. 심리 결과 해당 배심원의 행동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질문을 중지하고, 배심원에게 재설명한 다음 평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배심원 각자에게 문제가 되는 배심원의 행동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이후에 배심원 각자에게 평의 비밀을 유지할 것과 재판장의 질문으로 인하여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부하여야 한다.

평의가 진행되는 경우 배심원에게 사임 또는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배심원만으로 그대로 평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나(참여법률 제34조 제2항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배심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평의의 충실화를 위하여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참여규칙 제41조 제4항).

나. 배심원 대표

배심원 평의는 배심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평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참여규칙은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배심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할 수 없거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배심원 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하도록 하였다(참여규칙 제40조 제1항).

배심원 대표는 배심원 평의의 주재, 평의실 출입 통제 요청,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 요청,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평결 결과 집계,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평결서)의 작성, 평결서의 전달의 임무를 수행한다(참여규칙 제40조 제2항).

배심원 대표가 판사의 의견 진술을 요청하거나 평결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경위에게 말하거나 법원 직원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다. 배심원의 증거서류 제공 요청과 재판장의 권한

(1) 배심원의 증거서류 제공 요청

참여법률은 배심원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1차 평결에 이르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배심원이 판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평의의 진행을 위하여 증거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에게 서로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여규칙은 배심원이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41조 제2항).

참여규칙에서는 증거서류 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심원 각자가 배심원 대표에게 증거서류 제공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심원 대표는 증거서류 등의 제공을 요청한다(참여규칙 제40조 제2항 제4호).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은 구술로 하게 하면 충분하고,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배심원은 공판정에서 그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의실에서 다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평의 과정에서 배심원의 증거 제공 요청 없이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공한 상태에서 평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배심원의 증거 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배심원이 평의 도중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는지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지에 관하여 배심원 간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단순히 그 확인을 원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평의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배심원 과반수가 재판장의 의견을 요청하는지를 확인하게 한 후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통하여 배심원에게 증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관이 참여법

를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이용하여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자칫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실무 운영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배심원이 평의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검토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통해서 증거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증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증명력을 평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평의절차가 증거조사절차를 반복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이 서류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증거서류 제공 요청에 대한 판단

배심원 각자가 증거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배심원이 증거 요청권을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평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등 배심원이 증거 자체를 다시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증거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예를 들어 모든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다시 보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증거 제공 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배심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고 평의 진행에 협조하라는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장은 증거 제공 여부 및 제공되는 증거의 범위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배심원이 평의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검토하여야 하는 필요성, 제공할 증거의 범위를 특정하는 어려움, 전체로서의 증거를 벗어난 특정 부분에 대한 과도한 강조 가능성, 재판의 과도한 지연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요청 대상인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측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거에 대하여 과도하게 강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요청대상 증거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 제공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의 설명이 없는 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설계도면, 고유한 증거가치보다 선정성이나 선입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큰 사진(끔찍한 피해자의 사진),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일부 포함되고 그 삭제가 어려운 증거 등도 원칙적으로 증거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서류의 제공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서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거서류 사본 또는 증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실무상 논의될 수 있다. 증거서류 사본 또는 증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언제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평의 중 항상 법원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의 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다.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요청된 증거에 관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여 제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배심원에 대한 증거제공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들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증거 제공의 방법

증거서류의 경우에는 특별히 원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이, 증거물의 경우에는 증거물 원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제공하면 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녹음·영상녹화하여야 하므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속기·녹음·영상녹화의 결과를 활용하여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제공의 범위는 배심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부분 이외에 증언이나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요청된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요청된 범위 이상의 부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절차

(1) 유·무죄에 관한 평의

평의는 피고인별, 범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정리한 평결서 양식을 마련하여 재판장 최종 설명시 배심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평결서 양식은 기본 양식을 활용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평결서에는 범죄별로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배심원 대표가 평의를 진행하고 평결에 이르는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원 대표 또는 특정 배심원에 의하여 평의가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41조 제1항). 특히 유·무죄에 관한 평의는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의를 진행하는 중에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배심원 대표가 요청하여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단서, 참여규칙 제40조 제2항). 가급적 심리에 참여한 합의부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은 동일하게 ‘판사의 의견’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에 규정된 ‘판사의 의견’의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조항으로, 이는 국민 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과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판사의 의견’은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판사가 배심원에게 진술할 수 있는 의견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판사의 의견’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는 것을 조력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증거의 증명력, 사실인정과 같이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심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평의를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힌 경우 법원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무 운영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재판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법률 제46조 제3항에 규정된 ‘판사의 의견’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참여규칙은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여규칙 제41조 제5항).

재판장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에게 충분한 시간 동안 평의를 진행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만장일치 평결

배심제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평결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법률에서도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고 규정하여(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만장일치 평결을 1차적인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다.

배심원 대표는 배심원 모두가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토론한 후에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확인한다.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 확인도 피고인별, 범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결을 위한 배심원 의견확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평결을 위한 배심원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배심원 대표가 “이제부터 평결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유·무죄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배심원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유·무죄 의견을 말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법과 배심원이 투표용지에 유·무죄 의견을 기재하여 접은 후 투표함에 넣고 배심원 대표가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배심원 각자가 순차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방식은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는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순서로 의견을 말하는지에 따라 평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예를 들어, 처음 의견을 밝히는 배심원이 유·무죄 중 어떤 의견을 밝히는지, 그 배심원이 어떠한 배심원인지에 따라 그 후에 의견을 밝히는 배심원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 각자가 어떠한 평결을 하였는지를 배심원간에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점(예를 들어, 평결이 끝난 후 배심원 중 누가 어떤 평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배심원이 다른 배심원에게 설득당하여 유·무죄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이를 알게 된 다른 배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하여 의견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투표 방식은 단계별 절차 종결을 보다 명확히 해 준다는 장점(1차 : 만장일치 평결, 2차 : 다수결 평결)이 있으나, 투표 방식에 의할 때 평결이 끝나면 참여사무관 등은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평의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심원 대표는 후속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 확인 결과 피고인별, 범죄별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만장일치 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속 평의절차에서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의를 진행하게 된다.

(3) 다수결 평결

만장일치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의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 배심원 대표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에게 의견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6조 제3항, 참여규칙 제40조 제2항).

배심원이 이미 제1차 평의를 진행하여 유·무죄 의견을 정한 상태이고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자칫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평의

가 종료될 수 있다. 재판장은 위 의견진술 절차에서 배심원에게 토론을 충분히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 증거, 적용 법률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도 배심원으로 하여금 검사나 피고인 어느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인상을 주거나 일부 쟁점에 대하여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장 설명 방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배심원 대표는 토론을 충분히 진행한 후에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최종 확인한다.

(4) 평결서 작성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42조). 평결 결과의 비밀을 보장하고 평결서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심원 대표는 작성된 평결서를 평의실에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한다.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작성한 후 법원경위 등에게 평의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법원경위 등은 봉인된 평결서를 즉시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 평결서 확인

재판장은 평결서가 전달되면 이를 즉시 개봉하여 피고인·범죄별로 유·무죄 의견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 참여법률 제46조 제3항과 같이 법률이 정한 평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배심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평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평의절차를 위반한 경우(판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수결 평결에 이른 경우)에는 즉시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평결 직후 판결 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선고기일을 평결일과 달리 지정하고 배심원을 돌려 보낸 후에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배심원 대표 또는 배심원 전원을 상대로 확인을 거쳐 평결서 기재사항의 누락이 단순 착오인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의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평의가 진행되었음에도 특정 배심원이 유·무죄를 끝까지 밝히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상태로 평의가 종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평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배심원 수가 짝수인 경우 또는 배심원 수가 홀수이지만 기권 등으로 인하여 유·무죄가 동수에 이른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참여법률이 다수결에 의한 유·무죄 평결만을 규정할 뿐 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은 점,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심원이 다수결의 방법으로도 유·무죄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상태로 평의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평결서의 소송기록 편철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된다(참여법률 제46조 제6항).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점, 배심원 판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이유 뒤에 평결서를 편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평결서는 판결서 바로 뒤에 편철하여야 할 것이다.

03 | 양형 토의

가. 개요

참여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른 만장일치 방법이든지 또는 참여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른 다수결의 방법이든지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6조 제4항).

나. 다수결에 의한 유죄 평결시 무죄 의견인 배심원의 양형토의 참가 및 양형의견 개진 여부

다수결로 유죄 평결에 이른 경우 양형토의절차에서 무죄 의견 배심원이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양형토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양형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실무상 논의될 수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배심원은 평의 절차에서 다른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방법으로 평의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데, 무죄 의견 배심원의 양형토의 참가 거부 또는 양형의견 개진 거부가 배심원의 평의절차 참여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다.

다수결에 의한 무죄 평결에서 유죄 의견을 표시한 배심원이 평결 결과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피고인을 무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다수결에 의한 유죄 평결에서 무죄 의견을 표시한 배심원이 유죄임을 전제로 양형의견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그러한 배심원이 성의 있게 양형의견을 개진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에 양형 토의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죄 의견을 표시한 배심원만으로 양형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은 다수결에 의한 유죄 평결 후 양형토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무죄 의견인 배심원에게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 평결이 내려졌으니 양형토의에 참가하여 양형의견을 개진할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배심원이 여전히 무죄의견을 유지한다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양형이 적정한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배심원이 무죄 의견으로 인하여 도저히 양형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 양형의견서 작성 및 편철

참여법률 제46조 제4항에 따른 양형에 관한 토의는 판사에 의하여 주재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여법률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한 결과는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 집계는 평결과는 다르게 다수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심원별 양형 의견을 종류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된다(참여법률 제46조 제6항). 양형의견서도 평결서와 같은 이유로 판결서 바로 뒤에 편철하여야 할 것이다.

01 | 개요

가. 판결 선고기일

참여법률은 개정 형소법과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를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참여법률 제48조 제1항 및 제3항).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이 사형선고도 가능한 중죄일 뿐 아니라 판결 선고 전에 배심원의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즉일 선고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마친 시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직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까지 평결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판결이 졸속으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거가 방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급적 변론종결일부터 빠른 시일 안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일 선고를 하는 경우의 선고 시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 판사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토의를 거쳐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평결 직후에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면 소송관계인이나 배심원이 재판부가 과연 평결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심원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재판부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평결 결과가 전달된 때로부터 판결 선고 시점까지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판결선고시 배심원 출석 여부

즉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을 다시 법정에서 입정하여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한 후 선고기일을 진행하면 된다.

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종료되거나 특히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되는 경우 배심원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배심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규칙은 참여법률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참여규칙 제43조).

02¹ 선고 및 판결서 작성

가. 평결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의 고지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8조 제4항).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은 참여법률에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한 서면을 소송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할 뿐 법원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지 여부 및 고지 방법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나. 판결서의 기재사항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9조 제1항).

판결서에는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49조 제1항). 판결서에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먼저 평결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판사는 평의에 관여하지 않아 배심원의 평결결과만을 알게 될 뿐이고 그와 같은 평결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평결결과만을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유죄평결의 경우 진행되는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판사도 참여하게 되므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판결서에 개별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 배심원 평결과 권고적 효력

참여법률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46조 제5항). 배심원은 자신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그다지 인식하지 않지만,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내린 평결이 단지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재판에 참여한 국민으로서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민이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험이 전파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재판에 참여할 유인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민들이 자신이 내린 평결이 단지 권고적 효력이 그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유·무죄를 평결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우려도 있다. 비록 참여법률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권고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 선고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정에서 구두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8조 제4항). 판사는 배심원이 특정한 평결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배심원의 평결 이유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소송관계인을 설득하고, 배심원은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참여법률 제49조 제2항). 법정에서의 이유 설명과 마찬가지로 배심원의 평결 이유를 반박하는 형식의 설명은 부적절하다.

마. 배심원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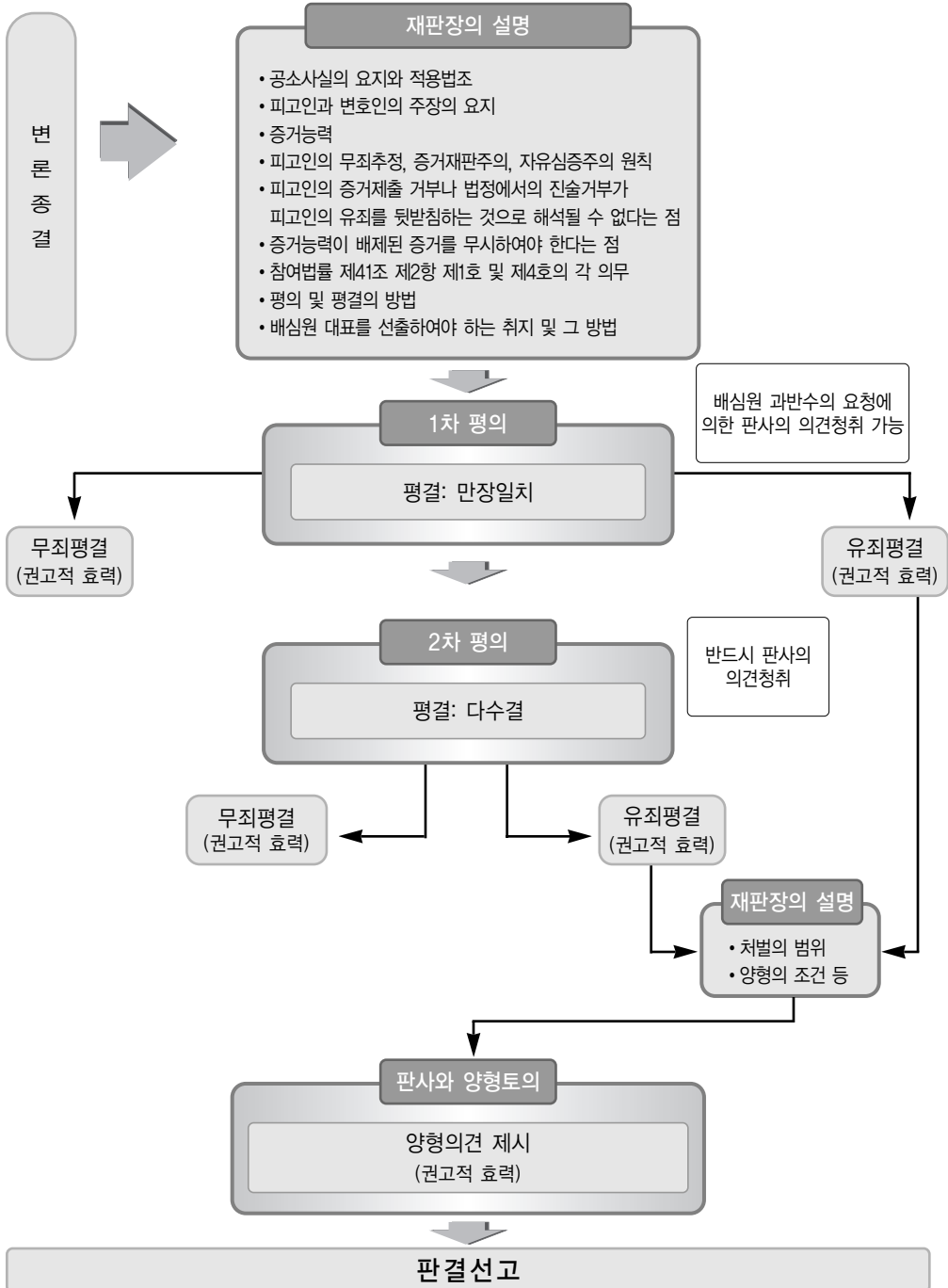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종료된다(참여법률 제35조 제1호). 재판장은 판결 선고를 마친 후 배심원에게 그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와 함께 배심원에게 참여법률 제47조에 따른 평의 등 비밀 유지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즉,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또는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여법률 제58조).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장 대표적인 비밀로는 참여법률 제47조에 규정된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의 판사 또는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를 들 수 있겠다. 그 외에 어떠한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분명하여질 것이다.

한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참여법률 제58조 제2항 단서).

배심원의 평의 방식



제10장
배심원 안내 · 편의 제공 · 보호

Supreme Court of Korea

01 | 개요

배심원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국민들 중에는 법원에 처음으로 와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존중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정중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 대기실 등의 출석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출입구의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하거나 배심원 선정기일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 출입구에 임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후보자가 대기하는 장소에는 편안한 의자, 테이블, 도서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한 신문기사 등을 비치하여 배심원후보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배심원후보자가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업무, 독서, 학업 기타 다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원 대기실에는 배심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홍보물화를 비치하여 배심원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직원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의 출석을 확인한 후에 배심원 안내 영상물을 상영한다. 이를 전후하여 배심원 후보자에게 배심원 선정절차·공판절차와 배심원 역할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배심원 직무수행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이해하여 면제 신청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배심원 안내 절차는 기본적으로 배심원 직무수행에 대한 안내 절차이지만, 국민들에게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원 업무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은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 등, 직무수행 기간, 점심시간 및 식사 장소 등과 같은 배심원 편의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법원은 배심원 대기실에서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을 확인하고 배심원 안내 동영상을 보여 주며 질문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질문표를 작성·제출하게 한다. 별도의 배심원 대기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원 사정에 따라 회의실 또는 당해 또는 다른 공판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02¹ 장애인에 대한 배려

법원은 장애를 가진 배심원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재판절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배심원후보자가 청력이 약한 경우에 재판절차에서 배심원후보자가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 | 개요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참여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참여규칙 제9조 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고,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여비 및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하고, 철도운임의 경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일당 및 격리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02 | 지급 절차

가. 지급 시기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한다. 참여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나, 격리 후 해당 기일의 여비 등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39조).

나. 지급 원칙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 등을 지

급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41조).

다. 지급 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42조).

1. 참여규칙 제15조에 의한 전담관리자는 각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 배심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에 대한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를 출력하여 총무과의 전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당 기일이 늦게 종료하여 업무 시간 내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청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2. 총무과 전도금출납공무원은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 등을 계산하여 교부할 금액을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에 기재한 후 해당 금액을 전담관리자에게 교부한다.
3. 전담관리자는 총무과 전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를 수령한 후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배심원별로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봉투’를 각 작성한다.
4. 전담관리자는 대기하고 있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5.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한 후 즉시 배심원 등 여비·일당 등 청구서 2장을 총무과 전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6. 총무과장은 다음날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출납의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7.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03 | 감면

법원은 ①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여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참여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③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참여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10조).

배심원 여비·일당의 구체적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40조).

감면 사유	일당 감면 기준
결격 (참여법률 제17조)	기본 일당의 25% 범위에서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제외 (참여법률 제18조)	위와 같음
제척 (참여법률 제19조)	위와 같음
면제 (참여법률 제20조)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 일당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해임 (참여법률 제32조)	당해 기일 일당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사임 (참여법률 제33조)	당해 기일 기본 일당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01 | 불이익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참여법률 제50조).

02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참여법률 제51조 제1항, 제2항 본문).

한편 향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연구 및 분석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허용하였다(참여법률 제51조 제2항 단서). 주의할 점은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현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03 |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가 축적되거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는 자칫 제3자에게 유출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52조 제1항).

한편 국민참여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예외로 하였는데, 참여법률 제52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한 예외로써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이 종결된 이후 개인정보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참여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참여법률 제52조에 따른 개인정보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참여규칙 제44조 제1항).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 동의 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5항).

04¹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참여법률은 재판장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53조 제1항).

참여법률 제53조 제1항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재판장은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장은 참여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방송 시청 금지, 전화·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참여규칙 제45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여법률 제53조 제2항). 다만 참여법률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 법령상 법원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참여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참여규칙 제45조 제2항). 신변안전조치 서면에는 요청인, 필요한 조치의 내용,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05¹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 행위 금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여법률 제56조).

06¹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편지·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 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여법률 제57조).

07¹ 배심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죄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여법률 제59조).

부 록

Supreme Court of Korea

참여법률 및 참여규칙 조문 대비표

참여법률	참여규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p>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p>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p>	

제5조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형법」 제144조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제2항 후단(폭발성물건파열 치사), 제172조의2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제2항 후단(중손괴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뇌물), 제4조의2제

제2조(대상사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식품제조 등),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부정 의약품제조 등의 처벌)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오염물질 불법배출)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마약)

<p>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제5조의9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p> <p>3.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p> <p>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p>	
<p>제6조 (공소사실의 변경 등)</p> <p>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p>	

<p>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7조 (필요적 국선번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p> <p>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p>	<p>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p> <p>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분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p> <p>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p>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p>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p>	<p>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p> <p>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p> <p>⑤ 제3항의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p>
	<p>제4조(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p> <p>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p> <p>③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p>

	<p>④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 게 명할 수 있다.</p>
	<p>제5조(공소장 변경 시 피고인 의사확인) ①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 본다.</p>
<p>제9조 (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p>	<p>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0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p> <p>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항의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p>	<p>제7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회부절차)</p> <p>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p>
<p>제11조 (통상절차 회부)</p> <p>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p>	<p>제8조(통상절차 회부)</p> <p>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p>

<p>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정을 준용한다.</p> <p>④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p>
<p>제12조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p> <p>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p> <p>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 (배심원의 수)</p> <p>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p>	

<p>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14조 (예비배심원)</p> <p>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p> <p>② 이 법에서 정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p>	
<p>제15조 (여비·일당 등)</p> <p>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한다.</p>	<p>제9조(여비·일당 등)</p> <p>①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p> <p>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고,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p>③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p>

	<p>④ 여비 및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정액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하고, 철도운임의 경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p>
	<p>제10조(여비·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p>제16조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p>	
<p>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p>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p>제19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p>	

<p>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p>제20조 (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 	<p>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 ②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

<p>일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p>	<p>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p>
<p>제21조 (보고·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단체에 배심원후보자·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p>	<p>제12조(주민등록정보)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같음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 제22조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p>

	<p>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p>
	<p>제14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p> <p>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후보예정자가 사망한 때 2. 배심원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3.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법 제17조,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p>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p>
	<p>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p> <p>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없다.</p>
<p>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p> <p>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p> <p>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p> <p>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 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p>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p>
<p>제24조 (선정기일의 진행)</p> <p>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25조 (질문표)</p> <p>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질문표)</p> <p>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p> <p>① 배심원후보자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p>
	<p>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p> <p>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한다.</p>

	<p>②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p>
<p>제26조 (후보자명부 송부 등)</p> <p>①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성별·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p> <p>①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28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p> <p>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p>	<p>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p> <p>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p>

<p>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배심원후보자는 제1항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 (이의신청)</p> <p>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p> <p>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제30조 (무이유부기피신청)</p> <p>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p>제21조(무이유부기피신청)</p> <p>①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법원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별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p>

<p>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p> <p>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이 때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p> <p>③ 검사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이 정한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합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때에는 각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서 선정기일에 행사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31조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p> <p>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p> <p>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p>	<p>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p> <p>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3조(선정기일 조서)</p> <p>①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 불선정 결정 8. 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 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 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p>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p> <p>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p>

제32조 (배심원의 해임)

①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뒀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뒀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

제25조(배심원의 해임)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p>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제33조 (배심원의 사임)</p> <p>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제26조(배심원의 사임)</p> <p>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 2.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 사임사유 <p>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p> <p>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4조 (배심원의 추가선정 등)</p> <p>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p>	

<p>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한다.</p> <p>②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p>제36조 (공판준비절차)</p> <p>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p>	<p>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 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제1항의 배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p> <p>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p> <p>④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7조 (공판준비기일)</p> <p>①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p>	
	<p>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p>

	<p>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8조 (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39조 (소송관계인의 좌석)</p> <p>①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p> <p>②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p> <p>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p> <p>④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p>	<p>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p> <p>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p>
	<p>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2조(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p>

	<p>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p>
<p>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p> <p>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p> <p>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p>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p>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p> <p>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p> <p>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p> <p>4. 이 법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p>	
	<p>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p> <p>①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p> <p>②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p>
<p>제42조 (선서 등)</p> <p>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p>	<p>제35조(선서 등)</p> <p>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여야 한다.</p> <p>②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43조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p> <p>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p>	
	<p>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p> <p>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p> <p>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5조 (공판절차의 갱신)</p> <p>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p> <p>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p>	<p>제37조(재판장의 설명)</p> <p>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2.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

<p>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p>	<p>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p> <p>3.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p> <p>4.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각 의무</p> <p>5. 평의 및 평결의 방법</p> <p>6.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p> <p>②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제1항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p>
	<p>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p> <p>① 재판장은 중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p>

	<p>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p>
	<p>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p> <p>① 법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p> <p>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p> <p>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p>
	<p>제40조(배심원 대표)</p> <p>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p> <p>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p>

	<p>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심원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 평결서의 전달
	<p>제41조(평의의 방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

	<p>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사실인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게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제47조 (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8조 (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p>	<p>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p>

<p>제49조 (판결서의 기재사항)</p> <p>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p> <p>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5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p> <p>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p> <p>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p> <p>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p>	<p>제4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p> <p>①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정보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p>

<p>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②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3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p>	<p>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배</p>

<p>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심원·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방송 시청 금지, 전화·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청인 2.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요청사유
<p>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p> <p>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p> <p>② 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의재판의 실시 2.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3. 수사·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4.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5.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공청회·학술토론회의 개최 7.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 <p>③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55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p> <p>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p> <p>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p> <p>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p>	
<p>제57조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p> <p>①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전화·편지·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위협행위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p>	
<p>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p> <p>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p>	

<p>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p> <p>①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p>	
<p>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 	

<p>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p> <p>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p>	
<p>부칙</p> <p>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p>	<p>부칙</p> <p>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Supreme Court of Korea

제1장 |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대상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제2조(형사사건 접수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여부 확인)

- 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형사사건의 공소장을 접수한 접수 담당 직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가 법 제5조 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접수 담당 직원은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장 부분 표지 등에 부전지 등을 활용하여 그 취지를 표시하여 기록을 인계한다.

제3조(사건의 배당)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다.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공소장 부분의 송달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여부 확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기에 앞서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피고인 의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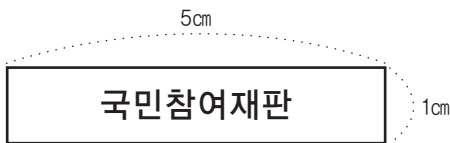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 ①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다.
- ②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와 의사확인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 ③ 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에 재판장 확인인을 날인한다.
- ④ 법원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다.

제7조(사건기록 표시 및 전산입력)

제6조 제3항에 따른 재판장의 확인을 마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국민참여재판’ 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다.



제8조(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그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한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설치된 다른 전문재판부(부패, 성폭력 등)에 배당되었던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제6조에 따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이송 결정을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이송받은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그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제10조(공소장 변경시의 특례)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산입력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통상절차 회부)

법원은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통상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12조(배제결정·통상절차 회부 결정시 조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후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국민참여재판’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다.

제3장 | 배심원의 선정 및 해임절차

제13조(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에 의한다.

제14조(지방법원별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수)

지방법원장은 매년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한다.

제15조(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

- 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배심원을 두는지 여부 및 예비배심원의 수
 3. 규칙 제21조에 따라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별로 행사 가능한 무이유 부기피신청 인원
 4.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5. 배심원 선정기일 절차 운영 방식
 6. 배심원 선정질문 시간의 제한 설정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방식
 8.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 방식
- ② 법원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제16조(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 ①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일 통지기간, 공판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한다.

제17조(배심원후보자 수)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 피고인의 수, 무이유부기피인원 수, 예상 재판 소요기간 및 예상 출석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 봉투를 함께 송달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는 늦어도 선정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19조(선정기일의 재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원에서 제출을 명한 기간까

지 질문표에 답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20조(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보고·서류송부 요구)

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선정기일 출석통지 취소 및 통지)

- ① 법원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선정기일 진행 준비)

- ① 법원은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배심원후보자명부에 따른 번호표를 교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상의에 부착하도록 한다.
- ②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표를 배부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한다.
-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표를 제공하여 답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별도의 질문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선정기일을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면 배심원후보자를 안내하여 선정기일이 열리는 공판정의 방청석에 착석하게 한다.

제23조(선정기일에 대한 안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의 개요,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에 대한 배심원후보자의 답변의무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4조(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추첨 및 착석)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고,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호명하여 배심원석에 차례로 착석하게 한다.

제25조(방청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안내)

재판장은 배심원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방청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을 주의깊게 듣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질문 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방식)

- ①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후보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불선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을 고지할 수 있다.

제28조(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선정절차 진행)

재판장은 불선정된 배심원후보자석에 착석한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전의 질문과 관련하여 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 및 번호)

-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될 때 착석한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그대로 부여한다.
- ②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여 예비배심원을 정한다.

제30조(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

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해임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배심원을 해임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31조(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

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사임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제32조(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

법원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견요청서 또는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의견요청서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동의 확인서

제33조(배심원 선정 및 해임절차 관련 서류의 보관 및 폐기)

- ① 법원은 법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질문표를 폐기한다.
- ② 법원은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송부받은 자료를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제4장 | 배심원의 평의

제34조(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

- ① 재판장은 배심원 대표 등으로부터 배심원 중 일부가 평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한다는 연락이 있는 때에는 배심원을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여 배심원이 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② 제1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해 배심원이 계속하여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먼저 배심원 대표 또는 다른 배심원을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여 당해 배심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 심리 결과 당해 배심원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을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기회를 부

여한다.

- ③ 재판장은 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절차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묻는다.

제35조(평결서 봉인 및 전달)

- ①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한다.
- ② 배심원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평결서를 봉인한 후 즉시 재판부에 연락하여 봉인된 평결서를 전달한다.

제36조(평결서 확인)

- ① 재판장은 평결서가 전달되면 즉시 이를 개봉하여 평결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한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평결서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판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수결 평결에 이른 경우와 같이 평의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그 보정을 명한다.

제37조(양형의견서 작성)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제38조(평결서와 양형의견서의 편철)

평결서와 양형의견서는 판결서 바로 뒤에 편철한다.

제5장 |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제39조(여비·일당 등의 지급시기)

- ①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한다.

- ②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격리 후에 기일이 진행되어 여비·일당 등을 지급할 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여비·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2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당해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사유에 따라 당해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여비·일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여비 등의 지급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규칙 제15조에 의한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 배심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에 대한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를 출력하여 총무과의 전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당 기일이 늦게 종료하여 업무 시간 내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청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2. 총무과 전도금출납공무원은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일당 등을 계산하여 교부할 금액을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에 기재한 후 해당 금액을 전담관리자에게 교부한다.
3. 전담관리자는 총무과 전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

서'를 수령한 후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배심원 별로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봉투'를 각 작성한다.

4. 전담관리자는 대기하고 있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5.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한 후 즉시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 2장을 총무과 전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6. 총무과장은 다음날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출납의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7.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격리수당의 지급절차)

격리수당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호의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을 “격리가 끝난 후 지체없이”로, “해당 기일에 출석한”을 “격리된”으로 각 본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예시)

Supreme Court of Korea

선정절차

→ 선정절차 개시

재판장 : 지금부터 ○○법원 2008고합00호 피고인 000에 대한 살인 사건의 공판을 위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검사, 변호인의 출석 확인 -

배심원후보자 여러분들도 출석하였나요?

→ 선정절차 안내

재판장 : 먼저 배심원후보자 여러분들에게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 여러분이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미 질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으므로 가늠하면 질문표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재판장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나게 되면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 중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참석한 여러분 중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법률에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배심원단의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를 일정한 수까지 기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흠이 있거나 능력이 부

족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기피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번호로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인의 번호를 잘 기억하셨다가 절차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일반 질문

재판장 : 지금부터 배심원후보자 여러분들에게 공통되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일 경우에는 앉아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제가 지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일 경우에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답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지명할 때 그러한 뜻을 말씀해 십시오.

재판장 : 먼저 여러분 중 혹시 한글로 진행되는 재판을 이해하거나 한글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 필요한 경우 직권 면제 -

재판장 : 다음으로 오늘 선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사무관 ○○○, 법원 서기 ○○○, 법원경위 ○○○, 속기사 ○○○입니다. 이 사건의 검사는 ○○검찰청 소속 ○○○ 검사이고, 변호인은 ○○○ 변호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 만약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추후 무작위추출되어 기피신청이 된 경우 선정 여부 결정 -

[제척사유 관련]

재판장 :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검사의 공소사실을 참고하여 사건의 내용을 설명 -
- 법률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관계인과 일정한 신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는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는 ○○○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 ○○○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현재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현재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전에 친족이었던 분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 보조인인 분, 또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분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나 재판 심리에 관여하였던 분도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번 배심원후보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가 말씀하신 사정은 배심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격사유 관련]

재판장 : 오늘 여러분은 이번 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출석하셨습니다만, 법률에서는 배심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표에도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질문표에 답변을 잘못 기재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다른 형사재판에서 금고나 징역,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형사처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됩니다.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번 배심원후보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 말씀하신 사정은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배심원후

보자께서는 계속하여 선정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사유 관련]

재판장 :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열거하는 직업 등에 종사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 경찰,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현역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입니다.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번 배심원후보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 말씀하신 사정은 배심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배심원후보자께서는 계속하여 선정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사유 관련]

재판장 :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이번 사건의 배심원으로서 직무 수행의 면제를 신청하십니까?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직무수행을 면제합니다. ○○번 배심원후보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만, ○○번 배심원후보자께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일단 ○○번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선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직권 면제를 하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고, 비록 ○○번 배심원후보자께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의 배심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번 배심원 후보자의 경우 직권으로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합니다. ○○번 배심원후보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 말씀하신 사정은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배심원후보자께서는 계속하여 선정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원후보자 무작위 선정

재판장 : 이제부터는 배심원후보자 중 몇 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별적인 선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살인죄의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재판에는 9명의 배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배심원이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배심원으로 3명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2명의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첨하겠습니다. 본 재판장이 부르는 번호의 후보자는 앞으로 나와 배심원석의 1번 자리부터 순

서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이 추천한 번호를 부름 -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배심원후보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차로 추천된 12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분이 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은 수만큼 다시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방청석에 계신 후보자 여러분도 지금 진행하는 배심원 선정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의무 고지

재판장 : 지금부터 여러분께 본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공정한 배심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문에 꾸밈없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되거나 선정되지 않기 위하여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일 경우에는 앉아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제가 지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일 경우에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이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답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지명할 때 그러한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피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지식에 관한 질문

재판장 :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가 피해자 ○○○을 칼로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 ○○○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건을 전부터 알고 있거나 피고인, 피해자 또는 증인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 사법 관련 지식,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질문

재판장 : 이번에는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재판장 : 혹시 형사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경찰관의 증언이 일반인의 증언보다 더 믿을 만하거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재판장 : 여러분 중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 그 밖에 법률전문가로 일하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재판장 :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은 법에 따라 무죄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고 증명할 책임이 없고 무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법 원칙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재판장 : 여러분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에 재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절차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나 증거에 관한 설명, 유·무죄나 양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법 원칙이나 법률 조항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재판장의 설명이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 다른 배심원 후보자들과의 관계 확인

재판장 : 여기 모인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서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 손을 든 배심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질문 및 답변 진행 -

➔ 검사와 변호인의 추가 질문

재판장 : 그럼 지금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을 할 때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주시고, 배심원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심원 후보자에 대

한 질문을 제한하거나 수정을 명하겠습니다.

또한 배심원후보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재판장 : 이상으로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신 배심원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답변을 토대로 법률이 정한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에 의한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 ○○번 배심원후보자의 경우 ○○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번 배심원후보자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후보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재판장 :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오늘 선정기일에서 배심원후보자들이 한 답변 등을 토대로 이유부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부 기피신청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한 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검사께서 이유부기피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부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장 : 검사의 기피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입니다. ○○번 배심원 후보자를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번 배심원후보자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부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재판장 :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번 배심원후보자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합니다.

(검사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장 : (배석판사와 협의한 후) ○○번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나,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검사의 이유부기피신청이 끝난 후 변호인의 이유부기피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 : 지금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배심원이 9명이므로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5명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께서 하시지요.

- 검사의 무이유부기피신청 후 -

재판장 : 이번에는 변호인께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시지요.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종료된 후 -

재판장 : ○○번, ○○번 배심원후보자들에 대하여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번, ○○번 배심원후보자는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필요한 배심원과 배심원후보자가 모두 선정될 때까지 동일한 절차를 반복 -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

재판장 : 이제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될 12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정된 12명 중 예비배심원 3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배심원은 참여관이 준비된 변호함에서 무작위로 3장의 번호표를 추첨하여 선정됩니다. 다만, 누가 배심원인지,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는 원활한 공판진행을 위하여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 예비배심원 3명을 선정한 후 -

재판장 : 방청석에서 대기하셨던 배심원후보자들께서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내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재판장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

재판장 :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의 최초 설명

재판장 : 지금부터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절차와 여러분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공판절차는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가 제시될 것인지, 그 증거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검사와 변호인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판준비절차를 통하여 공판절차에서 조사할 증거들에 관한 쌍방의 혐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됩니다. 증거조사는 먼저 검사 및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채택된 증거서류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 검사의 의견진술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 재판장이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 설명을 하게 되고, 여러분 중 어떤 분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후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평의실에 모여서 피고인이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에 대하여 토의한 후 평결을 내리고 만약 유죄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벌에 관하여 토의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재판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상대방의 질문이나 증인의 증언 등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는 그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검사나 변

호인의 이익제기에 대하여 재판부가 이익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질문이나 증언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나 증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부가 각각한 질문이나 진술이 무엇이었을까 추측하거나 평의에서 거론해서도 아니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 특정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추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의하여 명확하게 된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허용하는 경우)

여러분 앞에는 필기 도구와 메모지가 놓여 있고 본 재판부에서는 배심원 여러분이 재판 도중 필기를 하고 그 메모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필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메모지는 평의가 끝나면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겠습니다.

한편 배심원 여러분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을 하여 줄 것을 재판장인 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주신문, 반대신문 등이 끝난 후 제가 확인을 하였을 때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무도 부담합니다. 즉,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양형에 관한 토의가 완료되기 전에 임의로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고,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판절차 외에서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도 안 되며,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오로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임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변론종결까지

- 생략 -

➔ 최종 설명

재판장 :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고인 ○○○ 사건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조사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년 ○○월 ○○일 ○○에서 평소 원한을 갖고 있던 피해자 ○○○을 칼로 살해하였다는 것이고, 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5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 ○○○, ○○○입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측에서는 ○○○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공판절차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상반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잠시 후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의실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인데, 평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서로 잘 상의하셔서 배심원대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의 주재, 평의실 출입 통제 요청, 판사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 증거제공 요청, 평결 결과 집계,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 작성, 평결서 전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원활한 평의 및 평결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배심원대표를 뽑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배심원대표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평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 있어 증거법칙에 대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무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재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배심원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무

죄를 평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평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만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서류, 증거물입니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검사, 변호인의 모두진술, 질문, 이의제기, 최후변론 등은 모두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이며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증거의 경우 어떤 것이 반드시 더 우월한 증거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가치가 높은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더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평의하고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평의와 평결을 함께 있어 막연한 가정이나 추측에 의존해서는 아니 되고, 동정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평의하고 평결하셔야 합니다. 유·무죄에 대한 평결은 원칙적으로 배심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의견이 나눌 경우 토론과 설득 과정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자신의 올바른 의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배심원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기 위해서 재판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배심원 여러분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재판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심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견 일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 평결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의 다수결에 의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의견은 표명하지만 평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증인의 진술 내용이나 증거물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을 해 주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나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내용에 관하여 배심원간에 불일치가 있

으면, 단지 기억이나 메모에 의존하기보다 재판부에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이 끝난 후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평결을 하였을 때에는, 배심원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에 관하여 이 재판부와 함께 토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의 평결을 하게 되면 배심원대표께서는 그 즉시 재판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심원 여러분들은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제 허락을 받지 않고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고,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상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답변을 들은 후 -

재판장 :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한 최종설명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검사 등의 답변을 들은 후 -

재판장 : 이제 여러분들 중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던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 ○○번, ○○번께서는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때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세 분은 평의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임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가 귀하하셔도 된다고 연락을 드릴 때까지 ○○호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에 참가하실 수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께서는 배심원이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선정되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 사건의 재판이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평의실로 가서서 평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판결 선고는 평의가 종결되는 직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 선고

재판장 : 지금부터 ○○법원 2008고합00호 피고인 000에 대한 살인 사건의 선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검사 등의 출석 여부 확인 -

재판장 : 이 사건에서 배심원은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동일한 경우)

재판장 : 판결이유 및 양형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판결 선고 및 항소기간 고지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 : 본 재판부에서는 ○○○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비록 배심원은 유죄의 평결을 내렸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으므로 본 재판부에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배심원이 판결선고시 출석한 경우)

재판장 : 장시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재판에 참여하신 배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평의, 평결 및 토의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배심원 각자의 의견 및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배심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법원 2008고합00호 피고인 000에 대한 살인 사건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양식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배심원이 공판에 참여하여 증거를 조사한 후 유·무죄 평결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 희망의사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지방법원 지원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하지 않는 한 사건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2.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에게 질문한 후 선정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선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배심원은 변론종결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진행한 후 평결합니다. 유·무죄 평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4. 법원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및 양형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약 법원이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합니다.

○ ○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양식

재판부	제 ○ 형사부		재판장	확 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사건번호			죄 명	
피고인	성 명		구속여부	<input type="checkbox"/> 구 속 <input type="checkbox"/> 불구속
	주 거		연 락 처	
수령 (고지) 일시	<input type="checkbox"/> 위 사건의 공소장부분을 20 . . . 에 수령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위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20 . . . 에 고지받았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의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위 서면을 공소장부분을 송달(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 피고인의 의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이 있거나, 통상절차로의 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피 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200 피 고 인 인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 통지서 양식

통 지 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0 . . .

재판장 판 사 ○ ○ ○ (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의견요청서 양식

○○법원 제○형사부 의견요청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

피 고 인 ○○○

위 사건의 피고인이 별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 판 사 ○ ○ ○ (인)

의견서

○○법원 제○형사부 귀중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다고(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 :

200

○○검찰청 검사 ○○○ (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양식

○ ○ 법원
제○형사부
결 정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아래 호의 사유에 의한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및 이송 결정

○ ○ 법원
제○형사부
결 정

사 건 20 고탍

피고인 ○ ○ ○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200 . . .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및 이송 결정 통지

통 지 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탈

피 고 인 ○○○

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이송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0 . . .

재판장 판사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통상절차회부 신청서 양식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신 청 취 지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한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200 . . .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상절차회부 의견요청서 양식

○ ○ 법원 제○형사부 의견요청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통상절차 회부신청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 판사 ○ ○ ○ (인)

의견서

○○법원 제○형사부 귀중

위 통상절차 회부 신청은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 :

200

○○검찰청 검사 ○ ○ ○ (인)

통상절차회부 결정 양식

○ ○ 법원
제○ 형사부
결 정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주 문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한다.

이 유

아래 호의 사유에 의한다.

1.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3.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200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심원 수를 달리하는 결정에 대한 동의 확인서 양식

○ ○ 법원
제○ 형사부
동의 확인서

○○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 사건 배심원 수를 ○인으로 정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200

재판장 판사 ○ ○ ○ (인)

동의 확인서

○ ○ 법원 제○ 형사부 귀중

위 사건 배심원 수를 달리하는 것에 동의(부동의)합니다.

200

○○ 검찰청 검사 ○ ○ ○ (인)

배심원 수를 달리하는 결정 양식

○ ○ 법원
제○ 형사부
결 정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주 문

위 사건의 배심원 수를 ○ 명으로 정한다.

이 유

위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사건 배심원 수를 달리 정하는 것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불출석사유 신고서 양식

불출석사유 신고서(면제신청서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 신고를 받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함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함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됨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여부

(※ 다음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법관 · 검사 · 변호사 · 법무사 · 법원 · 검찰 공무원 · 경찰 · 교정 · 보호관찰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면제신청 여부(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란에 V 표시해 주시고, 면제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경우
-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병 ·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인 :

(인)

질문표 양식

배심원 후보자 번호	선정여부

질 문 표

질문표에 허위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이 름: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_____

주 소: _____

연 락 처: [집 전화] _____ [직장 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팩 스] _____

[이메일] _____

배심원 후보자 번호

※ 귀하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기재하거나 해당 사유에 V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 여

1. 직업 _____
2. 최종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3. 가족관계(동거하는 경우에만 기재)
 - 배우자 연령 _____ 직업 _____
 - 자녀
 - ① 연령 _____ 성별 _____ 직업 _____
 - ② 연령 _____ 성별 _____ 직업 _____
 - 부모
 - ① 부 연령 _____ 성별 _____ 직업 _____
 - ② 모 연령 _____ 성별 _____ 직업 _____
 - 기타
 - ① 연령 _____ 성별 _____ 직업 _____
 - ② 연령 _____ 성별 _____ 직업 _____
4. 귀하나 귀하의 가족,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법집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귀하나 귀하의 가족, 가까운 친구 중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5의 답변이 예인 경우),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① 누가, 언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까? _____
 - ②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③ 범죄자가 붙잡혔습니까? 예 아니오
 - ④ 귀하나 가족,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하여 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피해를 진술한 일이 있습니까? _____
7. 귀하나 귀하의 가족, 가까운 친구 중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8. (7번 답변이 예인 경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 어떤 내용의 재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함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함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됨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여부

(※ 다음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법관 · 검사 · 변호사 · 법무사 · 법원 · 검찰 공무원 · 경찰 · 교정 · 보호관찰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면제신청 여부(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란에 V 표시해 주시고, 면제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경우
-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병 ·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 양식

○○지방법원
제○형사부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

배심원후보자 성명 : ○ ○ ○

배심원후보자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어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도 법원에서 제출을 명한 기간까지 질문표에 답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불출석사유신고
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배심원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후
선정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시 : 2008. ○. ○. ○○:○○

장소 : ○○지방법원 ○호 법정(○호 회의실)

200 . . .

법원사무관 ①

※ 기타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형사 ○부 ☎ ○○○-○○○ e-mail: Honggildong@scourt.go.kr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

○○지방법원 제○형사부

수 신 : ○○ 시/구/읍·면

제 목 : 신원조회 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사람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조회사유 : 배심원 선정에 있어 결격사유 여부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재판장 판사 ○○○ (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양식

○○지방법원
제○형사부
사실조회

○○ 지방 경찰청장 귀하

사건 200○ 고합

위 사건의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하오니 200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조회대상자: 별지와 같음

[별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1	홍길동	123456-1234567

※ 회보서에는 당원의 사건번호(200○고합○○○)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 판사 ○○○ (인)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 양식

○○지방법원
제○형사부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

배심원후보자 성명 : ○ ○ ○

배심원후보자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귀하에 대하여 2008. ○. ○. ○○:○○ ○○지방법원 ○호 법정(○호 회의실)에 지정된 선정기일 출석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귀하께서는 위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 . . .

법원사무관 ①

※ 통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 ○○○-○○○ e-mail: Honggildong@scourt.go.kr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배심원 해임신청서 양식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해임 신청서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번 배심원 ○○○를 해임한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200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심원 해임 의견요청서 양식

○○법원 제○형사부 의견요청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
피 고 인 ○○○

위 사건의 ○번 배심원에 대하여 변호인 로부터 별지와 같이 배심원 해임신청이 있으므로 배심원 해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배심원을 해임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 판사 ○○○ (인)

의견서

○○법원 제○형사부 귀중

위 해임 신청은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검사 ○○○ (인)

배심원 해임 결정서 양식

○ ○ 법원 제○형사부 결 정

사건번호 20 고향

피 고 인 ○ ○ ○

주 문

위 사건의 ○번 배심원 ○○○를 해임한다.

이 유

아래 호의 사유에 의한다.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 제41조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3.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5.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6.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200 . . .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심원 사임신청서 양식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사임 신청서

사건번호 20 고향

피 고 인 ○ ○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사임을 신청한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200

신청인 번 배심원 ○ ○ ○ (인)

○○지방법원 귀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배심원 사임 의견요청서 양식

○ ○ 법원 제○형사부 의견요청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
피 고 인 ○ ○ ○

위 사건의 ○번 배심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배심원 사임신청이 있으므로 배심원 사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배심원을 사임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 판사 ○ ○ ○ (인)

의견서

○○법원 제○형사부 귀중

위 사임 신청은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 :

200

○○검찰청 검사 ○ ○ ○ (인)

배심원 해임 결정(사임) 양식

○ ○ 법원
제○ 형사부
결 정

사건번호 20 고평

피 고 인 ○ ○ ○

신 청 인 ○ ○ ○

주 문

위 사건의 ○ 번 배심원 ○ ○ ○ 를 해임한다.

이 유

신청인은 배심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배심원 선서서 양식

배심원 선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하게 평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배심원 ○○○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요청서 양식

○ ○ 법원 제○형사부 의견요청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위 사건 배심원의 해임 및 사임으로 인하여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합니다. 배심원을 추가 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재판장 판사 ○ ○ ○ (인)

의견서

○○법원 제○형사부 귀중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 :

200

○○검찰청 검사 ○ ○ ○ (인)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확인서 양식

○ ○법원
제○형사부
동의 확인서

○○검찰청 검사 귀하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위 사건 배심원의 해임 및 사임으로 인하여 ○인의 배심원이 부족합니다. 배심원을 추가 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200

재판장 판사 ○○○ (인)

동의 확인서

○○법원 제○형사부 귀중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동의(부동의)합니다.

200

○○검찰청 검사 ○○○ (인)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결정

○ ○ 법원
제○형사부
결 정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주 문

위 사건의 잔여 배심원 ○명이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이 유

위 사건 배심원의 해임 및 사임으로 인하여 ○인의 배심원이 부족하나, 배심원을 추가 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재판장 판사 ○ ○ ○ (인)

판사 ○ ○ ○ (인)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판장 설명 요청서 양식

재판장 설명 요청서

사건번호 20 고평합

피 고 인 ○ ○ ○

다음 법률적 사항을 재판장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 음

첨 부 서 류

200 . . .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평결서 양식(피고인 1인, 공소사실 1죄)

평결서

사건번호 200 고평 호

피고인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다음

죄명(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칼로 찔러 살해함
- 살인죄, 형법 제250조제1항

평결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00

배심원 대표	번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번	
배심원	번	
배심원	번	
배심원	번	
배심원	번	
배심원	번	
배심원	번	
배심원	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동 규칙 제42조

평결서 양식(피고인 1인, 공소사실 수죄)

평결서

사건번호 200 고평 호

피고인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다음

1. 살인죄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칼로 찔러 살해함
- 형법 제250조제1항

평결

-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 절도죄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 소유 현금 ○원을 절취
- 형법 제329조

평결

-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00 . . .

배심원 대표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동 규칙 제42조

평결서 양식(피고인 수인)

평결서

사건번호 200 고평 호

피고인 1. ○○○

2.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다음

1. 피고인 ○○○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칼로 찔러 살해함
- 살인죄, 형법 제250조제1항

평결

-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 피고인 △△△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강간 상해함
- 강간상해죄, 형법 제301조

평결

-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00 . . .

배심원 대표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동 규칙 제42조

평결서 양식(택일적/예비적 공소)

평결서

사건번호 200 고평 호

피고인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다음

1. 주위적 공소사실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의 목을 졸라 살해함
- 살인죄, 형법 제250조제1항

평결

-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 예비적 공소사실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 ○. ○. ○에서 피해자 ○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 폭행치사죄, 형법 제262조

평결

-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
-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유죄 : _____ 명

- 무죄 : _____ 명

200 . . .

배심원 대표 _____ 번 _____ (서명 또는 날인)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배심원 _____ 번 _____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동 규칙 제42조

양형의견서 양식(피고인 1인)

양형의견서

사건번호 200 고평 호

피 고 인 ○ ○ ○

죄명(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칼로 찔러 살해함
- 살인죄, 형법 제250조제1항

양형 의견

- 사형 : _____ 명
- 무기징역 : _____ 명
- 유기징역(금고) : _____
- 기타(집행유예 등): _____

이 사건의 배심원들이 위와 같은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음을 확인함

200

재판장 판사 ○ ○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항

양형의견서 양식(피고인 수인)

양형의견서

사건번호 200 고탐 호

피고인 1. ○○○

2. △△△

1. 피고인 ○○○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칼로 찔러 살해함
- 살인죄, 형법 제250조제1항

양형 의견

- 사형 : _____ 명
- 무기징역 : _____ 명
- 유기징역(금고) : _____
- 기타(집행유예 등) : _____

2. 피고인 △△△

공소사실(요지) 및 적용법조

- 피고인은 ○년 ○월 ○일 ○에서 피해자 ○를 강간 상해함
- 강간상해죄, 형법 제301조

양형 의견

- 사형 : _____ 명
- 무기징역 : _____ 명
- 유기징역(금고) : _____
- 기타(집행유예 등) : _____

이 사건의 배심원들이 위와 같은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음을 확인함

200 . . .

재판장 판사 ○○○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항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 양식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청구서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금액	수령인
	청구 내역	
2007고합1234	○○ 원	
	(여비: ○○원, 일당: ○○○원, 숙박료: ○원)	
2007고합1234		
2007고합1234		

계: ○○○원
 위 금원 수령함 ㉠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함.

200

법원사무관 ○ ○ ○

반환액 원 위 금원 수령함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 양식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교부부

월 일	재판부	내역	금액	수령인	회 수		총무과장 확 인
					현 금	증거서류(원)	

주: (1) 이 장부는 총무과에 비치할 장부임.

(2) 수령인란에는 전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배심원등의 여비등과 그 청구서를 받은 실수령자가 날인함.

(3) 회수란의 증거서류란에는 배심원 등의 수령한 금액을 기재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

배심원 등의 예비·일당 등 봉투 양식

봉 투

○○ 법 원	
금	원정
{ 고 호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 일당 등}	
○○○ 귀 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발행일 2007년 12월 21일

발행처 법원행정처

편집 및 인쇄 아텍디자인 (02-2279-2214~5)

非賣品

